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정책학석사학위논문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김 경 환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과 정책확산 요인을 나누어 구분하였고 각 요인들을 GRDP(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 등록장애인 비율과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수로 조작화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을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청 및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였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은 전국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연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요인으로서 GRDP와 재정자립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분석 진행 전, 연구가설로 GRDP와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사회적 요인인 등록장애인 비율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분석 진행 전, 연구가설로 등록장애인 비율이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정책확산 요인인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수는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수가 많을수록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 연구가설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이는 정책확산이론에 근거하여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정책선택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제정 가능성을 열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동시에 본 논문은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양적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질적인 연구도 병행되어 균형 있는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관련 조례의 제정이 장애인 스포츠 분야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어: 기초지방자치단체, 등록장애인 비율,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 장애인체육, 재정자립도, 조례, 체육진흥, GRDP
학번: 2014-23697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방법론 및 본 연구의 구성 ····· 6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 ····· 8
제 1 절 장애인체육 의의 ····· 8
1.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 ····· 8
2. 장애인체육 ····· 10
3. 장애인체육 및 관련 재정지출 결정요인 선행연구 ····· 16
제 2 절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 22
1.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의 의의 및 목적 ····· 22
2.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의 현황 및 특징 ····· 23
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추이 ····· 28
4. 정책결정요인론 ····· 31
5. 조례 제정 결정요인 선행연구 ····· 33
제 3 절 정책확산이론 ····· 34

제 3 장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37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가설 ····· 37
1. 연구의 분석틀 ····· 37
2. 연구가설 ····· 38
제 2 절 주요 변수의 선정과 측정 방법 ····· 41
1. 종속변수 ····· 41
2. 독립변수 ····· 41
3. 통제변수 ····· 43
제 3 절 분석방법 및 분석대상 ····· 45

1. 분석방법 ····· 45
2. 분석대상 ····· 45

제 4 장 분석결과의 해석 ····· 47
제 1 절 연구대상의 지역적 특성 ····· 47
제 2 절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 및 상관관계 분석 ·· 48
제 3 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여부에 따른 주요 변수 차이 ····· 50
제 4 절 회귀분석 결과 ····· 52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55

참고문헌 ····· 59
부록 ····· 66
Abstract ····· 82

표 목 차

<표 2.1> 장애 개념체계(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 강조) ····· 9
<표 2.2> 2015~2017년도 장애인생활체육 실행 유형 비율 ····· 12
<표 2.3> 2017년도 장애인 체육활동 및 여건 ····· 14
<표 2.4> 광역지자체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조항 ····· 25
<표 2.5> 장애인체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의무에 대한 법률 ····· 26
<표 2.6> 2005년 이후 마련된 제도적 기반 ····· 29
<표 2.7> 기초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 연도 ····· 30
<표 2.8> 정책혁신 확산의 종류 ····· 34
<표 3.1> 기초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현황 ····· 46
<표 4.1> 연구대상의 지역적 특성 ····· 47
<표 4.2>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분석 ····· 48
<표 4.3> 연구모형의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 49
<표 4.4>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여부에 따른 차이 ··· 51
<표 4.5>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의 결정 요인· 54

그 림 목 차

[그림 1] 분석틀 ····· 37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적절한 신체활동 즉 체육은 건강증진의 효과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의하면, 체육은 비만, 암, 당뇨병 등의 각종 건강과 관련된 위험을 감소시키고 근력, 유연성 등을 향상시키며 우울 및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건강 문제도 해소해 준다(WHO, 2013).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도 체육이 체중 조절, 심혈관질환, 각종 암 등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뼈와 근육을 강화시키며,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CDC, 2011).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체육의 효과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신체적·심리적 효과 외에 의료비 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8).

한편 이러한 체육 효과는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즉 장애인도 적절한 신체활동을 하면 신체적·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이들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의료비를 절감해준다(보건복지연구센터, 2018). 이와 같이 장애인이 신체활동을 통해 심신건강을 향상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이들의 체육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적극적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체육 수준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최소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6.4%로 나타났는데(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

체육회, 2017), 이는 비장애인의 48.2%가 정기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이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운동 차이는 지역사회 내 체육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8년 기준 현재 전국에 장애인 체육시설은 63개(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2018년 8월 7일 검색)에 불과한 반면, 전국 일반 체육시설의 수는 25,000여개(통계청 홈페이지 2018년 8월 7일 검색)에 달한다. 체육시설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 장애인조차 체육시설 내의 편의시설, 운동용품 및 장비, 보조인력, 생활체육 프로그램, 생활체육 지도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2017).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34조,「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별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9월 기준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는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 총 226개 중 80개(기초 시 32, 기초 군 10, 기초 구 38)만 제정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조례란 주민에 근접한 입법을 통하여 지역적인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이기우, 2008), 장애인체육 관련 조례의 보유는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장애인 체육정책보다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정책을 더욱 실효성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조례는 지자체의 핵심적인 정책의사결정 행위로 지자체의 행정과 예산의 근거가 된다(김순은, 2015)는 점에서, 장애인체육 관련 조례 제정을 지자체에서 규정한 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이

고 안정적으로 장애인 체육정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장애인체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는 시군구에 따라 제정 여부가 균일하지 않아, 어떠한 요인에 의해 해당 지역에서 조례제정이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장애인체육의 열악한 환경을 보완하기 위한 관련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최근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이들의 운동 특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김일수 외(2018), 김동원 외(2016), 임재란 외(2013) 등의 연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운동특성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 장애 유형 등 장애 특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 심리적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미시적인 측면에서만 장애인체육을 살펴보고 있다는 데 한계가 있다.

정책이나 법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장애인 체육진흥 및 현황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다양하다(강병일 외, 2014; 문건필, 2012; 변재훈, 2006; 손석정, 2014; 조창옥 외, 2012; 최승권 외, 2005). 이러한 연구들은 장애인 체육 관련 법률 및 정책의 변천과정을 거론하거나 개선여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였다. 또한 특정지역 몇 곳을 지정하여 그 지역의 장애인체육 현황 및 발전 방안, 특히 조직정비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체육시설 지원 및 확충,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발효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실질적·현실적으로 지역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임에도 어떠한 요인들이 조례 제정

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의 제정이 해당 지역에 따라 어떠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에 대한 검토분석이 필요하지만 직접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한편 GRDP(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 및 등록장애인 비율이 각 지자체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선행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김경호, 2003; 문수진 외, 2015; 서상범 외, 2010; 이상일 외, 2016; 정진현, 2003; 진재문, 2006), 이를 통해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 여부를 유추해볼 수 있다. 이들은 주로 종속변수인 사회복지비 지출이 사회적·경제적 요인인 장애인비율, 지역내총생산(GRDP), 재정자립도와 같은 독립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 양(+)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아울러 정책확산은 특정 개혁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회체계 내의 구성원들 사이에 전달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Rogers, 2010; 김규동, 2008), 정책확산이론은 외부적 결정요인과 내부적 결정요인으로 구분된다. 외부적 결정요인은 근접지역 지자체의 정책 채택 여부를 말하는데 이는 특정 지방정부의 정책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방정부의 정책을 모방하여 채택할 경우 정책확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이충환, 2012). 내부적 결정요인은 지방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 등이 정책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경쟁이 심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일수록 혁신적 정책을 좀 더 활발히 수용함을 제시하고 있다(Gray, 1973). 그러므로 정책확산이론에 근거하여 인접지자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도 해당 지자체의 조례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의 결정

요인을 경제적, 사회적 요인뿐 아니라 정책확산이론에 근거한 정책확산 요인도 함께 분석하여 조례 제정에 중요한 요인을 밝힘으로써,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방법론 및 본 연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가 경제적 요인(GRDP, 재정자립도), 사회적 요인(등록장애인 비율), 정책확산 요인(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수)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유무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2018년 9월 기준)로 설정하였으며,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18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모형에 포함될 주요변수의 이상치, 결측치 검토를 위해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조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조례 유무 여부에 따라 주요 변수가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X^2-test와 t-test를 진행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결정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방법론 및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으로 제1절에서는 장애인체육의 의의를 제시하고 제2절에서는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3절에서는 정책확산 이론을 기술하여 각각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으로 제1절에서는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가설, 제2절에서는 주요 변수의 선정과 측정 방법, 제3절에서는 분석방법 및 분석대

상을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기술통계분석, t-test,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대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 및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확산 방안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

제 1 절 장애인체육의 의의

1. 장애와 장애인의 개념

장애란 객관적 특성과 주관적 특성을 모두 가진 다차원적 개념이므로 이를 명확히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정하선 외, 2018). 질병이나 손상(impairment)으로 이해될 경우, 장애는 개인의 신체나 정신에만 국한되는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반면,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로서 이해될 경우, 장애는 사회에서 개인이 배제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및 제도적 불이익을 자칭하는 개념으로 여겨질 것이다(정하선 외, 2018).

황수경(2004)에 의하면 세계보건기구의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y and Handicap)가 장애의 보편정인 정의와 기준을 제시하였다. 1970년대에는 ICIDH가 처음 개발되었고 이어 1980년에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 의해 처음으로 공인되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던 장애를 기능적·구조적 손상(impairment), 행동 패턴의 제약(disability)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차별 및 불평등을 겪게 되는 장애를 사회적 관점으로도 접근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표 2.1> 장애 개념체계(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 강조)

Disease	➜	Impairment	➜	Disability	➜	Handicap
* 질병 (건강상태)		* 신체적 차원 * 신체적 손상		* 개인적 차원 * 기능장애 - 심리적/생리적/신체구조적 기능손실 또는 비정상 - 일시적 및 영구적 기능장애 * 능력장애 -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 또는 결여 - 기능장애가 객관화된 결과 (예: 시력저하로 인해 볼 수 없는 경우, 다리기능의 손상으로 못 걷는 경우) - 분류: 행동장애, 운동장애, 의사소통장애, 자기관리장애, 신체적 장애, 상황적 장애, 동작장애, 활동장애		* 사회적 차원 * 기능장애/능력 장애에 따라 각 개인에 대한 사회/경제/문화/환경 등에서의 사회화현상 * 동일한 연령/성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상대적으로 불이익에 처하게 하는 상황

출처: WHO, 장애분류모델(1980)

이 모델은 능력장애의 측면보다는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현재 장애인의 정의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1981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내의 정의이다. 이 법의 제2조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으로,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1990년에 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서도 장애인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장애인복지법」 과 비슷하게 정의하고 있다.

한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서는 「장애인복지

법」 제2조 혹은 제3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

2.1. 장애인체육 개념

장애인체육은 특수체육(adapted physical education)과 동등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특수체육은 1973년에 제정된 「재활법」 제504조(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와 그 수정 조항에서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조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한두 가지 이상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은 손상된 자(disabled person)로 등록되거나 간주되는 사람이다. 또한 「장애인교육법」에 의거하여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모든 아동은 「재활법」 제504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재활법」 제504조에 해당되는 모든 아동이 반드시 「장애인교육법」에 의해 장애가 있는 아동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장애인교육법」에 따른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아동이라 할지라도, 모든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Winnik, 2014).

특수체육은 사람들의 독특한 요구(unique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된 개별화프로그램이다(Winnik, 2014). 특수체육의 'Adapt'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조정하다, 적합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독특한 요구를 가진 아이들을 '수정·조정'하여 적합하게 만드는 데 주목적이 있다

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수체육은 신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능력에 차이가 있는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안정적으로 참여하여 자기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운동을 말한다.

한편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서도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정의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관악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서는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서는 "장애인체육이라 함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장애인체육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신체 활동을 행하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2.2. 장애인체육 현황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은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생활이 증대하면서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운동참여를 통해 건강의 유지 및 증진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키고, 신체활동을 통한 즐거움을 주는 등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더욱 조성되고 있다(조창욱 외, 2009).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2017년 공동 수행한 장애인생활체육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생활체육 실행유형 조사결과 '완전 실행자'[1]는 전체의 20.1%, '불완전 실행자'[2]는 55.8%로 나타났으며, '현재

1) 장애인 생활체육에서 정의하는 '완전 실행자'의 개념은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재활치료 이외 목적, 1주일 2~3회 이상 운동,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자를 말한다.

운동하지 않지만 운동의지가 있는 자'는 12.8%, '현재 운동하지 않고 향후에도 운동할 의지가 없는 자'는 11.3%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도별 장애인생활체육 실행자 비율은 매년 점차 증가하였다. 2015년 15.8%였던 실행자 비율은 2017년 20.1%로 오르면서 최근 3년 사이에 4.3%p 증가하였다. 반면에 불완전 실행자는 2015년 54.6%였던 비율이 2016년 57.1%로 점차 증가하였다가 그 다음 해에 1.3%p 소폭 하락하였다.

생활체육에 대한 장애인의 관심 및 참여 여부는 이들의 장애유형, 장애등급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활체육의 완전 실행자 비율 증가는 비교적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수가 감소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나, 1·2·3급의 비교적 심각한 장애등급을 가진 등록 장애인수는 2015년 965,381명, 2016년 969,557명, 2017년 1,177,712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통계청)는 점에서 비록 소폭의 변화지만 완전실행자의 비율 증가는 지역적 특성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즉,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의 유무나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지역장애인들의 태도가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표 2.2> 2015~2017년도 장애인생활체육 실행 유형 비율 (단위:%)

유형 / 연도	완전실행자	불완전실행자	현재 운동하지 않지만 운동할 의지가 있는 자	현재 운동하지 않고 후에도 운동할 의지가 없는 자
2015년도	15.8	54.6	16.5	13.1
2016년도	17.7	57.1	13.2	12.0
2017년도	20.1	55.8	12.8	11.3

출처: 「2017년 장애인생활체육 실태조사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2) 장애인 생활체육에서 정의하는 '불완전 실행자'의 개념은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실행자에 속하지 않는 모든 분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한편 2017년 장애인생활체육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운동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전체의 75.9%로, '없다'는 응답 24.1% 대비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운동 실시 비율에 대한 응답 분석은 2009년 처음 실시되었는데, 1년 간 지속적으로 운동을 한 장애인 비율은 69.8%였다. 이는 2013년 69.3%로 0.5%p 소폭 하락 하였다가 2017년 75.9%로 대략 7%p 다시 증가하였다.

2017년도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장애인 체육활동을 한 연령대는 20대였는데 이들의 비율은 81.8%로 10대(78.5%)보다도 높았다. 30대(72.0%)의 운동 실시 비율은 60대(76.1%) 보다도 낮았는데 그 비율은 4.1%p나 차이가 났다.

또한 장애인 체육활동을 최근 1년간 열심히 한 지역은 대전/충청 지역이었으며, 그 비율은 83.9%로 다른 권역과 비교하여 유일하게 80%를 넘겼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실시 여부가 가장 낮았던 곳은 광주/전라도 지역이었으며, 그 비율은 70.5%로 대전/충청과는 무려 10%p나 차이가 났다.

장애유형으로 보자면 최근 1년간 운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했던 장애인은 청각/언어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 비율은 다른 장애들에 비해 83.7%로 가장 높았다. 지체장애인은 78.0%로 그 다음을 이었다. 운동 활동량이 가장 낮은 장애인으로는 지적/자폐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은 70%도 넘기지 못한 67.5%를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2.3> 2017년도 장애인 체육활동 및 여건 (단위:%)

구분	체육활동 및 여건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여부		주변 체육시설 이용률				
		있다	없다	공공 체육시설	민간 체육시설	학교/직장 체육시설	기타부대 체육시설	자가 시설
전체		75.9	24.1	11.0	3.6	2.8	15.2	7.8
성별	남성	76.2	23.8	10.5	3.5	3.1	14.0	7.9
	여성	75.3	24.7	11.8	3.9	2.4	17.1	7.6
연령	10대	78.5	21.5	14.2	12.1	6.5	12.3	7.2
	20대	81.8	18.2	9.4	4.1	3.2	15.6	4.7
	30대	72.0	28.0	9.0	1.9	1.8	17.8	5.9
	40대	72.4	27.6	10.4	3.0	2.9	10.6	7.2
	50대	77.0	23.0	9.9	3.5	2.8	14.1	8.4
	60대	76.1	23.9	12.0	3.7	2.7	16.8	8.3
권역	서울	71.7	28.3	11.4	4.4	2.1	17.4	8.1
	인천/경기	78.9	21.1	11.1	4.4	3.0	15.2	6.7
	대전/충청	83.0	17.0	9.5	2.8	3.8	13.6	9.9
	광주/전라	70.5	29.5	9.5	2.9	2.4	16.0	8.3
	대구/경북	72.4	27.6	11.3	3.2	2.5	13.7	7.7
	부산/울산/경남	76.4	23.6	12.4	3.3	3.2	15.1	6.8
	강원/제주	74.2	25.8	11.7	3.4	2.2	13.9	9.9
장애유형	지체장애	78.0	22.0	12.4	3.9	2.7	14.1	7.5
	시각장애	70.7	29.3	6.9	4.2	2.9	18.0	9.5
	청각/언어장애	83.7	16.3	9.5	2.9	1.8	17.2	7.4
	지적/자폐장애	67.5	32.5	10.8	3.7	3.6	15.5	8.0
	뇌병변장애	76.1	23.9	11.9	3.5	3.1	16.2	8.3
	기타	74.0	26.0	9.1	2.7	3.1	15.4	7.1

출처: 「2017년 장애인생활체육 실태조사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한편, 주변 체육시설 이용률에 대한 장애인들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공공체육시설'[3]은 11.0%, '민간 체육시설'[4] 3.6%, '학교/직장 체육시설'

3) 공공체육시설에는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이 있으며, 전문체육시설은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2.8%, ‘기타 부대 체육시설’ 15.2%, ‘자가 시설’ 7.8%였다. 기타 부대 체육시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점은 장애인들의 거주지와 체육시설과의 접근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체육시설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을 조사한 결과 공공체육시설까지 걸리는 평균 편도시간은 18.79분, 민간체육시설 20.77분, 학교/직장 체육시설 20.79분, 기타부대 체육시설 15.54분, 자가 시설 1.99분이었다. 즉, 자가 시설을 제외하면, 기타 부대 체육시설이 거주지와 가장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2017년도 조사에서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했던 연령대는 10대였으며 이들은 대체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였다. 10대는 모든 체육시설 이용률에 대해 다른 연령대들을 압도적으로 능가하기는 하였지만, 기타 부대 체육시설에 대해서만큼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들보다 압도적으로 사용률이 낮았다. 모든 체육시설별 이용률이 가장 낮았던 연령대는 30대였다. 30대의 체육시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곳은 17.8%의 비율을 보인 기타 부대 체육시설이었다.

권역별로 보면,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률에 대한 비율은 대체적으로 유사하였다. 다만, 광주/전라 지역에서 기타 부대 체육시설의 이용률이 16%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서울과 강원/제주의 경우 학교/직장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률이 각각 다른 지역들에 비해 소폭 뒤쳐진 2.1%와 2.2%였다.

이용할 수 있는 실내·실외 체육시설을, 직장체육시설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을 위해 직장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말한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단 「2017년 장애인생활체육 실태조사보고서」에서는 직장인 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4) 민간 체육시설에는 체육단체,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개인, 기업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있다.

또한, 2017년도 조사에서는 장애유형별로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장소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체장애인의 비율은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에서 12.4%로 가장 높았다. 민간체육시설은 시각장애인이 4.2%로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학교/직장 체육시설은 지적/자폐장애인의 3.6%의 이용률로 다른 장애유형의 비율보다 조금 더 높았다. 나머지 다른 두 개의 체육시설인 기타 부대 체육시설과 자가 체육시설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비율이 높았지만, 그 이유는 근접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시각장애인이기에 사용 비중이 다른 장애인에 비해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장애인체육 및 관련 재정지출 결정요인 선행연구

장애인체육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진흥을 위한 법 정책적 고찰 및 현황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 다수이다(강병일 외, 2014; 문건필, 2012; 변재훈, 2006; 손석정, 2014; 조창옥 외, 2012; 최승권 외, 20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병일 외(2014)와 변재훈(2006)은 경상남도와 충청북도의 지역사회 장애인체육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이들 연구는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제안으로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조직정비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체육시설 지원 및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고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전국장애인과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건필(2012)은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이 연구는 장애인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 장애인생활체육의 참

여율 향상, 엘리트 체육인을 위한 지원, 장애인 행정 서비스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우선 생활체육의 저조한 참여율 개선을 위해 장애인 시설 및 전문가 양성 확대를 강조하고, 둘째, 장애인 엘리트에 대한 조건 없는 투자와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통한 자금 확보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셋째로는 장애인체육과 일반체육 간의 행정 서비스 시스템은 환경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장애인체육의 행정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법적 및 정책적으로 접근한 손석정(2014)은 장애인체육 관련법들은 선언적 성격의 조문이 많아 법적 구속력이 미흡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장애인체육의 원활한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관련부처 간의 협력과 뚜렷한 역할분담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 기반 정착을 위해서 별도의 장애인 체육진흥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장애인 체육현황 및 변천과정에 대해 다룬 조창옥 외(2012)는 2005년에 개정된 장애인 체육법률은 1962년에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비해 뒤늦게 법률 근거에 따라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체육은 연령별, 장애유형별에 따라 적용해야 할 변화요건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법 사항을 개정할 시 장애인의 체육여건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 장애인 체육법률 또한 함께 발전하여 통합사회의 발판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최승권 외(2005)는 보건복지부의 행정력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체육이 국민체육의 일부분으로 속하지 못하고 법률적, 제도적으로 구분되어 차별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체육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재정확보의 수단과 능력 또한 현저히

부족하다고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체육업무를 관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여 국민체육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발전도모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주로 장애인 체육현황, 변천과정 및 법·정책적 연구 영역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를 위한 제도개선, 보완해야 할 법·정책 개선,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장애인 체육진흥 도모를 위한 지역적 차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진행된 연구는 드물었다.

다만 손석정(2015)은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관한 연구를 일부 진행하여 전국적으로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첫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와 일반 체육 분야의 조례를 통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무엇보다 장애인체육 관련 법 가운데는 구속력이 미흡한 것이 많기 때문에 법의 개·제정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체육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 발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한편, GRDP(지역내총생산), 재정자립도, 등록장애인 비율 등 사회적·경제적 변수를 활용한 장애인체육 관련 연구는 부족하였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적 변수들 및 정치적·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예산의 지출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다양하였다(김경호, 2003; 문수진 외, 2015; 서상범 외, 2010; 이상일 외, 2016; 정진현, 2003; 진재문, 2006).

김경호(2003)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 하에서의 사회복지비 결정에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복지비는 사회복지의 실질적인 공급을 규정하는 사회보장비를 이용하고, 사회복지결정요인 변수는 지역소득, 인구, 수급자 수, 등록장애인 수, 소년소녀가장 수, 재정자립도 변수로 구성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지역의 등록장애인의 수가 지역의 사회복지수준을 나타내는 한 변수로서 사회복지비에 양(+)의 영향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복지 수요측면의 변수로서도 등록장애인 수의 변화가 사회복지비 지출이 결정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았다.

문수진 외(2015)는 우리나라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 74개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사회복지예산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였으며, 특히 영향요인 가운데 선거, 정치이념 등 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 분석을 진행한 결과 사회복지예산지출 증가에 정치이념 변수 모두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예산 지출결정 중요요인으로 사회적 환경변수도 고려되었는데 그중 고령인구비율과 기초수급자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보였지만 장애인인구비율의 경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지역에서 장애인 수가 많을수록 이들에 대한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서상범 외(2010)는 분권교부세의 실시여부로 사회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요인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살펴보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분석모형으로는 정치·행정적, 사회·경제적, 점증주의적, 복지수요 등을 함께 고려한 통합모형을 근거로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예산지출에 주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및 복지수요로 나타났으며 이에 해당하는 독립변수로는 인구밀

도,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부담액,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전년도복지비지출비율, 등록장애인 비율 등이 있다. 이중 사회복지비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우선순위로 정하게 될 경우 1인당 지방세부담액, 재정자립도, 등록장애인 비율, 전년도복지비지출비율, 인구밀도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록장애인 비율의 경우 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사회복지예산지출액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실시 후에는 상대적으로 더 감소되었다고 이 연구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등록장애인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복지증가 및 수준이 높아지고 복지에 대한 지출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상일 외(2016)는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재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광역지자체는 기초적이고 의무적인 복지수혜대상자 중심으로 재원을 지출하고 있고, 보편적인 복지수요에 대응한 재정적 여력이 없어 이전재원에 의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복지수요의 증가는 결국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나 생산노동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재활훈련이나 일자리 기회부여 지원의 확대를 의미한다. 즉,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에 양(+)의 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가설로 내세웠던 '장애인등록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지출이 증가할 것이다'는 채택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비율이 16개의 광역자치단체의 1인당 사회복지예산 지출비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현(2003)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실질적인 지방자치제의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 하에서의 지역사회복지재정 지출 결정에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종속

변수인 사회보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독립변수로 지역소득, 인구, 생활보호자 수, 등록장애인 수, 소년소녀가장 수, 재정자립도를 변수로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등록장애인 수, 생활보호자 수 및 재정자립도의 영향은 양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생활보호자 수, 등록장애인 수의 경우 지방정부가 지역의 복지예산지출 관련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 이들의 현 수치 변화에 따라 지역복지예산이 탄력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재정자립도는 지역사회복지재정 상태에서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는데 이는 재정능력을 나타내는 주요변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재정자립도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의 재정수준에 따라 지역의 복지수준이 향상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진재문(2006)은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시행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16개 광역시·도의 사회보장비 비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과는 다르게 경제고통지수를 새롭게 활용하였고 지방자치변수로서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와 없는 해를 구분하여 더미(dummy)변수로, 한국사회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를 외환위기변수로 각각 선정하였다. 새롭게 투입된 변수들을 활용하여 요인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의 사회보장비 비율에 대해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광역시지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증가가 사회보장 영역이 아닌 비사회보장 영역의 예산과 상대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제 2 절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1.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의 의의 및 목적

조례는 주민에 근접한 지방의회가 법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자와 수범자간의 거리를 좁히는 기능을 한다(이기우, 2008). 본래 법이란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주 원칙이다. 그러나 지역마다 그 특성이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모든 법을 동일하게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이해 가능한 일반적인 특성들만 법제화하여 획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는 조례의 대상이 된 사안에 대해서 지역적 및 정치적 색깔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정책을 만들 수 있게 되며, 이 과정을 기초지방자치단체정부와 주민의 거리가 좁혀지는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

한편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별로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체육진흥 목적에 대한 내용도 전국 시·군·구 별로 비슷하지만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만 조례가 제정된 지역인 만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악구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양군 문화·체육진흥 조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단양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문화·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울시 관악구와 충청북도 단양군의 경우 명문화된 목적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다른 7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2.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의 현황 및 특징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이 중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총 80개(32개의 기초 시, 10개의 기초 군, 38개의 기초 구)의 지역이다. 대체적으로 시·군·구 별 조례의 내용은 유사하다. 체육진흥 조례가 있는 지역은 공통적으로 목적, 정의, 책무, 장애인체육동호회, 장애인체육교실, 경비의 지원, 준용, 시행규칙 등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5)]

그러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존재하고 있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유사할 수는 있어도 모든 용어나 개념이 다르게 사용되거나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기준으로 마포구에서는 ‘책무’라는 조항이 없지만 종로구에서는 존재한다. 이외에도 장애인체육교실 관련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반대로는 있다. 이와 같이 체육진흥 조례가

5) 가장 최근에 생긴 마포구(2017.12.28.)는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는데 이는 부록1로 첨부하였다.

있는 지역은 완전히 똑같을 수 없지만 큰 틀에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8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2개의 지역에서는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악구·서대문구·송파구·양천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울산광역시 북구·울주군, 경기도 구리시·의정부시, 충청북도 증평군,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남도 통영시에서는 구청장·군수·시장에 대한 책무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 이들 모두 장애인 체육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다.

한편 1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광주광역시·강원도·전라북도·경상북도·경상남도 등 5개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그 아래 5개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진흥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다. 이전에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또한 조례제정이 되어있었으나 모두 폐지되었다.

5개 광역지자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는 모두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법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아래 <표 2.4>와 같다. 각 광역지자체 조례의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그 조항명과 내용이 모두 동일하며,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을 규정한 조항의 경우에는 재정지원, 재정적 지원, 경비의 지원 등으로 조항 명을 다르게 쓰고 있다. 하지만 각 차이점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강원도와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제3조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는 시장 또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유일하게 제9조에 보고·검사 조항을 두고 있고, 경상남도는 제4조 장애인체육동호인클럽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 구분된다. 이

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유사한 구조의 조례를 통해 장애인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4> 광역지자체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조항

광역지자체	조항
광주광역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제4조 장애인체육 시설 제5조 장애인체육 편의 제공 제6조 경비의 지원 제7조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제8조 포상 제9조 보고・검사 제10조 시행규칙
강원도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 지원 등 제5조 안전관리 등 제6조 준용 등 제7조 포상 제8조 시행규칙
전라북도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제4조 사업의 종류 제5조 재정적 지원 제6조 준용
경상북도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 장애인체육진흥 사업추진 제5조 사업의 위탁 대행 및 권장 제6조 재정지원 제7조 포상 제8조 시행규칙
경상남도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 장애인체육동호인클럽 제5조 경비의 지원 제6조 준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국가에서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법·제도적 지원과 함께 다양한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손석정,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 참여율을 보면, 2017년 기준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59.2%인 반면에 정기적으로 생활체육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생

활체육 실행자는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장애인 생활체육, 2017).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2018년 9월 기준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는 시·군·구 중 현재 32개의 시, 10개의 군, 38개의 구 등, 총 80개의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체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약칭 「장애아동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 등 몇몇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다(손석정, 2015).

<표 2.5> 장애인체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의무에 대한 법률

법률		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체육시설법」 제6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제1항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아동복지법」 제2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복지지원 외에 문화·예술·스포츠·교육·주거 등의 영역에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법」 제27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2030 스포츠 비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 스포츠활동 참여 환경 구축을 통해 스포츠-교육-복지의 통합연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스포츠 참여율 증대를 목표로 정한 바 있으며,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로 생활밀착형 장애인

전용 스포츠시설을 건립하되, 장애인도 기존의 일반 스포츠시설을 이용 가능하도록 시설 개선 병행을 추진 중에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또한, 광역단위에 장애인국민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3개소가 운영 중이고 12개소는 건립 중이다. 그리고 현재 모든 부처에는 장애인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 및 파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시·도를 중심으로 장애인체육회 내 전담 센터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252개소의 보건소 및 41개소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운영 중에 있고 교육부는 199개소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중일 릴레이올림픽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프로리그 교류 활성화, 청소년 및 장애인 스포츠 교류, 올림픽 개최지 연계관광, 반동핑 관련 정보교류 등 교류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체육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과,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과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 단위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재활협의체[6]”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7]”(행정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 교육기관, 자원봉사단체 등 참여)등에 시도·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참여를 확대하여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검토 중에 있다.

---

6) 지역사회재활협의체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과 유사개념이며 이는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활용하여 장애인 및 재활병원 퇴원환자(조기퇴원으로 장애등록이 안된 자)의 지역사회복귀지원 및 건강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관계 기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추이

2005년 8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조례가 처음 제정되었다. 이는 2005년 문화관광부로의 장애인체육 이관과 장애인체육의 법적·제도적 기반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공포(2005.7.29.)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2005.11.25.)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한 첫 첫발에 이어 동 년 12월 보건복지로부터 장애인체육을 이관 받아, 문화관광부에 장애인체육과를 신설하고 장애인 체육진흥 업무를 총괄 추진하게 된(문화관광부, 2007)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의 업무 이관 이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다음 <표 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6> 2005년 이후 마련된 제도적 기반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이관 이후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05.7) • 대한장애인체육회(2005.11) 및 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2006.5) 설립 → 16개 시·도지부 설립 완료(2008.2) •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내 → 장애인체육과 신설(2005.12) •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및 발표(2007.7)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4) →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명문화, 동법 시행령 제정(2008.4) •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2008.10)

출처: 「제2차 장애인체육 진흥 중장기계획」(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 2013)

한편 이에 앞서 1982년 12월 28일에는 체육부가 발족되면서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인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대회 지원기구 정비강화방안'과 1983년 1월 14일 내무부 지침인 '시·도 체육지원 전담기구 설치지

침'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시·도 및 교육위원회에 체육행정 담당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문화관광부, 2007). 1989년에는 지방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표 아래 시·도 별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진흥 및 체계적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주민의 체육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생활체육과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관련법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장애인 및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관련법들이 다수 제정되었는데 이러한 노력들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총 80개가 제정되었으며 이는 <표 2.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7> 기초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 연도

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2005	대전 대덕구
2008	광주 서구, 군포시, 김포시, 안동시
2009	종로구, 도봉구, 대구 남구, 대구 수성구, 인천 중구, 인천 동구, 인천 연수구, 인천 강화군,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오산시, 하남시, 영월군, 전주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담양군
2010	중구, 대전 동구, 파주시, 양주시
2011	노원구, 수원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정읍시, 나주시, 보성군, 통영시, 거창군
2012	강동구, 청주시, 증평군, 부산 동구
2013	용산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 대전 중구, 울주군, 고양시, 용인시, 김제시
2014	양천구, 울산 북구, 광명시, 포천시
2015	중랑구, 강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서초구, 대저 서구, 성남시, 과천시,

	경기도 광주시, 충주시, 단양군, 군산시, 해남군, 영암군, 상주시, 창원시[8]
2016	대구 서구, 대구 북구, 인천 부평구
2017	마포구, 평택시, 구리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4. 정책결정요인론

정책결정요인분석은 정치 및 경제적 측면들 간의 체계적(systemic) 관계에 관한 연구로,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이론이다. 정치체제의 산물인 정책은 투입되는 환경의 요구와 정치체제의 구조적 차이, 운영방식의 차이 및 정책결정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정정길 외, 2015). 이는 곧 사회·경제적 및 정치·행정적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산출되는 정책의 내용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정책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재정학자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변수가 강조되었다가 정치·행정학자에 의해 정치·행정적 변수가 추가되면서 1980년대까지 두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노화준·남궁근, 1993).

사회·경제적 결정론(socieconomic determination model)은 Fabricant의 연구(1952)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는 미국 주정부의 예산 규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소득, 도시화, 인구밀도 등 세 가지 사회·경제적 변수를 제시하였다. 또한, Dawson과 Robinson(1963)은 사회·경제적 요인 외에 정치체제 간의 경쟁을 또 다른 요인으로 추가하여 같이 분석한 결과,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정치적 변수는 정책 산출에 직접적인

8) 2010년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가 통합하여 창원시가 됨.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후 이어진 Dye(1966), Hofferbert(1974) 등의 연구 역시 Dawson-Robinson모형(경제적 자원모형)에 동의하였다(노화준 외, 1993). 이처럼 사회·경제적 변수의 우위를 지지하는 모형에서 주로 사용되는 변수는 인구수 및 인구밀도, 주민소득, 도시화수준, 교육수준, 실업률, 연령 등이 있다.

반면, 정치·행정적 결정론(political determination model)은 정부 내의 한정된 자원 배분이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입장으로, 정당의 이념과 선거에서의 경쟁 등 정치·행정적 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이다(지병문 외, 2003). 이 이론은 Key(1963)의 연구에서 미국 남부 주정부의 정책결정이 사회·경제적 변수보다 정당 간의 경쟁, 유권자의 투표율, 당파성, 엽관제 등 정치적 변수들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음이 입증됨으로써 성립되었다. 더불어 Lockard(1959)는 경제적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다양한 정당이 번성하고, 그 결과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가진 정당 간의 경쟁이 발생하며 재정의 지출규모와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즉, 정치·행정적 결정론의 대표적인 모델인 Key-Lockard모형(참여-경쟁모형)은 사회·경제적 변수가 정당 간의 경쟁과 투표율 등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그 정치적 변수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남궁근, 1994).

5. 조례 제정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

하혜영 외(2011)는 제7대 경기도의회에서 처리한 546개 조례안을 대상으로 그 실적과 내용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가운데 조례 제정 결정요인과 관련하여, 이들 조례안의 제출사유를 보면 의회가 자치적 필요에 의해 능동적으로 발의한 조례안은 75.6%를 차지하였다. 이는 관련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례안 발의가 24.4%인 것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즉, 상위법령에 따른 수동적 활동보다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새로운 조례안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이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제정에까지 이르렀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한편, 지방정부의 정책채택 요인은 크게 해당 정부의 내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견과 인접 지방정부의 정책을 학습하거나 모방하여 이루어진다는 외부적 요인의 의견으로 나뉜다(이은국 외, 2015). 먼저 내부적 요인에 의한 정책채택에 대해서는 이은미 외(2014)의 연구가 주목된다. 이 연구는 지자체의 정책채택 사례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례를 채택한 129개 지자체는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이거나 재정력이 높은 지역이었고, 특히 단체장의 정치성향이 조례채택 당시 집권여당과 동일할 경우 높은 채택 비율을 보였다. 결국 지자체의 정치행정적 요인이 조례채택에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대웅 외(2014)는 정책채택에의 외부적 요인, 나아가 지자체간 정책 아이디어 소통에 기반한 네트워크 요인이 최근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 5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상으로 채택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매결연 체결 등을 통하여 지자체간 협력 공동체를 구성하고 신뢰를 형성하여 정책을 교류·공유하는 관계를 맺는 네트워크 요인이 조례 제정에 유의미하게 작용하였음을 밝혔다.

이처럼 조례 제정은 각 지자체가 결정권을 가지고 특정 또는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 채택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중앙집권적으로 국가가 정책도입을 주도·결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채택

한 정책의 효과와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 실패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지자체는 모험적인 시도를 하기 보다 인접 지자체나 상위 정부의 정책 가운데 성공을 거두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학습·모방하여 새로운 정책으로 채택함으로써 위험부담을 줄이려 한다. 이러한 현상을 정책확산이라고 하며, 지방정부의 정책채택에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가 외부적 요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이대웅 외, 2014) 이유가 이 때문이다.

제 3 절 정책확산이론

정책확산(policy diffusion)은 특정 개혁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회체계내의 구성원들 사이에 전달되는 과정을 의미한다(Rogers, 2010; 김규동, 2008). 김대진 외(2010)는 정책확산을 최초의 채택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채택한 이후 다른 잠재적 채택자들도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점차 혁신을 수용한 채택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일정지역에서 어떤 정부에 의하여 새롭게 개발 또는 도입된 정책이 다른 정부 단위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져서 정책을 채택한 정부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박경돈(2018)은 정책확산이란 한 지역의 정책선택이 다른 지역의 정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책이전(policy transfer)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최상한(2010)은 지역적 확산은 주변국의 정책확산을 야기하고 세계화는 세계 각국 정부에 특정 정책을 확산시켜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 각국의 국경을 해체하고 있다고 정책확산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정책확산은 외부적·내부적 결정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9] 먼

9) 아울러 정책확산은 크게 확산의 동기, 확산의 속도, 확산의 방향 등 세 가지 기준에 의해 그 종류를 분류할 수 있다.

<표 2.8> 정책혁신 확산의 종류

분류기준	개념	확산의 특징
확산의 동기	사회적 학습	먼저 채택한 국가/정부를 일종의 실험실(experiment laboratory)로 삼아 새로운 정책의 상대적 이점을 학습하여 정책혁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시간/자원의 제약으로 정책성공여부에 관한 결론을 얻기 힘든 경우에 사회적 학습이 일어난다.
	경제적 경쟁	다른 국가/정부보다 경제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정책을 이미 채택한 또는 채택할 것으로 예

저 외부적 요인은 근접지역 지자체의 정책 채택여부를 말하는데, 이는 특정 지방정부의 정책을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방정부에서 모방하여 해당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한 것을 의미한다(이충환, 2012). 이승종(2004)과 최상한(2010) 역시 정책확산의 외부적 결정요인은 지역적 확산 모형과 동등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정부의 정책이 지리적으로 이웃한 정부의 정책 채택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정책이 확산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정책확산은 중앙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중앙집권체제가 아닌 분산된 정책결정권에 바탕을 두어 지자체에 의해 이루어진 각 지방의 정책이 자연스러운 확산과정을 통하여 다른 지방에 전이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정치제도이다(Berry& Berry, 1990; 김혜정, 2006; 이승종, 2004: 이충환, 2012에서 재인용).

반면, 내부적 요인에 의한 정책확산은 지방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 등이 정책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Gray(1973)는 더 구체적으로 정치적 경쟁이 심하고 재정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혁신적 정

		상되는 인근의 국가/정부에 경제적 이익을 빼앗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경쟁적 정책의 확산이 일어난다.
	정치적 압력	정치적 압력에 의한 확산은 다른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하여 주민/국민들이 자신들의 정부에게 정책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여 정책이 확산된다.
확산의 속도	초기 채택	빠른 시기에 선도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정부/국가가 초기채택자가 된다. 대체로 정책의 분석능력과 정책분석을 수행할 자원이 많은 대도시정부나 선진국들이 초기채택자의 역할을 하며 이들은 이후에 채택하는 다른 도시나 국가들에게 실험의 기회(policy experiment lab)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느림보 채택	초기채택자들에 비하여 가장 늦게 정책을 채택하거나 아직 정책을 채택하지 않은 정부나 국가들에 해당된다.
확산의 방향	수직적 확산	상위정부/국제기구로부터 하위정부/개별국가로 정책이 전파되는 경우(Top Down)와 하위정부수준에서 상위정부수준으로 정책이 확대되는 경우(Bottom Up)로 나눌 수 있다.
	수평적 확산	비슷한 수준의 정부 사이에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경계를 공유하는 이웃정부로부터 정책이 확산되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진 정부로 정책이 확산된다. 또한, 같은 수준의 정부 내에서도 대도시의 정책이 중소도시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다.

출처: Frances S. Berry·김대진(2010)

책을 좀 더 활발히 수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승종(2004)에 의하면 지방정부가 갖는 특징에 따라 혁신의 채택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는 혁신 전파자와 수용자 간의 지리적 인접성보다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특징과 정책혁신의 수용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일차적 관심을 갖는다고 하였다. 김대진 외(2010)는 국가 또는 정부의 내적 요소들이 정책 혁신을 결정한다고 보았는데, 주로 일인당 평균임금과 같은 경제학적 요인, 도시화나 교육수준 같은 인구통계학적 요인, 리더십이나 정치이념, 정당경쟁 같은 정치적 요인, 그리고 지역특유의 문화적 요인 등이 새로운 정책의 채택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한편, 앞선 선행연구들을 절충하여 정책확산에 있어 외부적 결정요인과 내부적 결정요인 모두 중요하다고 본 연구가 있다(석호연, 2010). 특정한 정책을 채택한 지방정부가 인접 지역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실험 결과들을 미리 제공하여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정책혁신을 위한 주요 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서 새로운 정책도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정치적 지지가 부족하고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낮을 경우 정책이 확산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책확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결정요인과 외부적 결정요인 모두 중요하다고 보았다.

제 3 장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의 분석틀 및 연구가설

1. 연구의 분석틀

본 논문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 파악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무엇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게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는데, 우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채택된 지역은 총 80곳에 불과하다. 반대로 146개의 시·군·구는 해당 조례가 없다. 즉 이러한 조례 제정 여부에 차이를 가져온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책확산 요인 등 세 가지 변수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변수들 간의 관계와 경로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모형을 정리하고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1. 경제적 요인 - GRDP - 재정자립도 2. 사회적 요인 - 등록장애인 비율 3. 정책확산 요인 -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수	→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

통제변수
도시비도시, 기초지방자치단체 면적,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수

[그림 1] 분석틀

2.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의 세 가지 요인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책확산 요인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가설을 세웠다.

연구가설 1. *경제적 요인(GRDP, 재정자립도)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GRDP(지역내총생산)와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일수록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관련법 및 조례들이 제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진재문(2006)은 GRDP를 16개 광역시·도의 사회보장비 비율 변화에 대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보았고 이는 광역시지역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진현(2003)은 재정자립도가 지역의 재정수준에 따라 지역의 복지수준이 향상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해당자치구의 재정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GRDP와 재정자립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의 가능성도 커진다고 본다.

연구가설 2. *사회적 요인(등록장애인 비율)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등록장애인 비율이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장애인을 위한 관련

법 및 조례들이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더 많이 제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경호(2003)는 지역의 등록장애인 수가 사회복지비에 양(+)의 영향을 나타냈고 또한 등록장애인 수의 변화가 사회복지비 지출이 결정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문수진 외(2015)는 지역에서 장애인 수가 많을수록 이들에 대한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등록장애인 수가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일수록 이들의 건강 발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결과로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연구가설 3. *정책확산 요인(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수)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수가 많을수록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제정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석호원(2010)은 지역축제 확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분석결과 이웃정부의 지역축제 채택이 지역축제 채택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최상한(2010)은 효율성이 높은 정책의 도입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주변국들의 정책입안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채택한 결과 효율성이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게 될 경우 관련 조례가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행보를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웃정부들끼리 정책이 확산되는 경우 이들

은 사회적·문화적으로도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정부들 사이에서 학습으로 인한 확산인지, 경쟁 또는 모방 등을 통한 확산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다(Walker, 1969; Gray, 1973; Berry&Berry, 1990: 정다정 외, 2018에서 재인용). 나아가 본 연구는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들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웃 정부들은 정책적 환경과 특성이 유사하다고 본다(정다정 외, 2018). 하지만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자원의 제약과 정책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할 경우, 정책을 도입한 이웃 정부의 사회적 학습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김대진 외, 2010). 이와 같이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생기는 경우 모방, 경쟁으로 인한 정책의 확산이 아닌 학습으로 인한 확산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는 관련 정책을 먼저 채택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일종의 정책실험실로 삼아 상대적 이점을 학습하고 정책혁신을 받아들여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2 절 주요 변수의 선정과 측정 방법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이다[10]. 명확한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없는 지역과 있는 지역을 구분하여 있는 지역은 '1', 없는 지역은 '0'으로 더미(dummy)변수로 선정하고 활용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수들의 세 가지 요인이 종속변수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는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책확산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은 GRDP[11]와 재정자립도[12]로 조작화하였으며, 사회적 요인과 정책확산 요인은 등록장애인 비율[13]과 인접 기

---

10) 종속변수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로 선정한 이유는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0개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내용이 대동소이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 분석을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1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GRDP는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활용하였다.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제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정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작성하였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7년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작성하였다.

1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제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정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작성하였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7년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작성하였다.

1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장애인 비율은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제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정 직전연도를 기준

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수[14]로 각각 조작화하였다.

(1) 경제적 요인

본 연구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은 선행연구에 따라 GRDP(지역내총생산)와 재정자립도로 조작화하여 측정하였다(정진현, 2003; 진재문, 2006). 이와 같이 이들을 조작화한 이유는 1인당 GRDP는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GRDP를 인구수로 나눈 개념으로 전체 지역의 측면에서 경기수준을 나타낼 수 있고,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최선미, 2016).

(2) 사회적 요인

본 연구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은 선행연구에 따라 등록장애인 비율로 조작화하여 측정하였다(김경호, 2003; 문수진 외, 2015; 서상범 외, 2010; 이상일 외, 2016).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등록된 장애인 수가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수가 많은 지역은 장애인 관련법 또는 조례가 제정되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사회적 요인을 이와 같이 조작화하였다. 따라서 사

으로 데이터를 작성하였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7년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작성하였다.

14)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제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정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작성하였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7년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작성하였다.

회적 요인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측정 및 연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3) 정책확산 요인

본 연구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확산 요인은 선행연구에 따라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수로 조작화하여 측정하였다(석호원, 2010; 최상한, 2010).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제정되는 데 인접 지역의 관련조례 제정 여부가 영향력을 끼치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정책확산 요인을 이와 같이 조작화하였다.

3. 통제변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따라 GRDP, 재정자립도, 등록장애인 비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명확한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서는 기타 요인들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도시비도시, 기초지방자치단체 면적,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수로 선정하였다.

도시비도시를 통제변수로 선정한 이유는 도시지역일수록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비도시지역에 비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최선미(2016)는 도시지역의 강한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보았고, 특히 도시지역은 비도시지역에 비해 결속력이 강하고 덜 배타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동시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면적과 인구수

란 변수를 통제한 이유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넓이와 주민등록인구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3의 변수들의 개입이 통제되어야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다.

제 3 절 분석방법 및 분석대상

1.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핸들링 및 모형분석을 위해서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모형에 포함될 주요변수의 이상치, 결측치 검토를 위해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조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진행하였고,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례 유무 여부에 따라 주요 변수가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X^2-test, t-test를 진행하였다. 넷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행 조례 채택 여부의 회귀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2. 분석대상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2018년 9월 기준)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조례 여부 확인을 위해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장애인체육’, ‘장애인 운동’, ‘장애인 생활체육’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 여부를 전수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 시기는 2018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였다.

그 결과 전국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시행 중인 장애인 체육진흥관련 조례는 총 80개(32개의 기초 시, 10개의 기초 군, 38개의 기초 구)로 나타났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8개의 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17개의 구), 전라남도(8개; 4개의 시, 4개의 군), 인천광역시(7개; 1개의 군, 6개의 구), 광주광역시(5개의 구), 대구광역시(4개의 구), 대전광역시(4개의 구), 충청북도(4개; 2개의 시, 2개의 군), 전라북도(4개의 시), 경상남도(3개; 2개의 시, 1개의 군), 울산광역시(2개; 1개의 군, 1개의 구), 경상북도(2개의 시), 부산광역시(1개의 구), 강원도(1개의 군)의 순이었다. 반면에 충청남도는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15]와 제주특별자치도[16]는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있다.

<표 3.1> 기초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현황 (단위:개)

광역지자체	시	군	구	광역지자체	시	군	구
서울특별시	-	-	17	강원도	0	1	-
부산광역시	-	0	1	충청북도	2	2	-
대구광역시	-	0	4	충청남도	0	0	-
인천광역시	-	1	6	전라북도	4	0	-
광주광역시	-	-	5	전라남도	4	4	-
대전광역시	-	-	4	경상북도	2	0	-
울산광역시	-	1	1	경상남도	2	1	-
경기도	18	0	-	**총합**	**32**	**10**	**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15) 2012년 연기군을 편입하여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아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이다.
16)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제 4 장 분석결과의 해석

제 1 절 연구대상의 지역적 특성

연구대상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비도시의 빈도수는 각각 97, 129이며 비율은 42.9%와 57.1%이다. 둘째 기초지방자치단체 면적은 평균 433,843,636.54(SD=381,420,174.91)이다. 셋째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수는 10만 미만에서는 빈도 수 91 비율 40.3%, 10만 이상 30만 미만 빈도 수 67 비율 29.6%를 보였으며 30만 이상 50만 미만 빈도 수 45, 비율은 19.9%이다. 50만 이상 100만 미만 빈도는 20 비율은 8.8% 100만 이상 빈도는 3 비율은 1.3%를 나타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수는 평균 221,585.35(SD=214,120.03)로 나타났다.

<표 4.1> 연구대상의 지역적 특성 (N=226)

구 분	분 류	빈 도(N)	비 율 (%)
도시비도시	도시	97	42.9
	비도시	129	57.1
기초지방자치 단체 면적	평균(표준편차)	433,843,636.54(381,420,174.91)	
기초지방자치 단체 인구수	10만 미만	91	40.3
	10만 이상 30만 미만	67	29.6
	30만 이상 50만 미만	45	19.9
	50만 이상 100만 미만	20	8.8
	100만 이상	3	1.3
	평균(표준편차)	221,585.35(214,120.03)	

제 2 절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 및 상관관계 분석

주요변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경제적 요인(GRDP, 재정자립도)은 지역 내 총생산 평균 6,239,782.23(SD=7,898,623.94), 재정자립도 평균 27.52(SD=15.03), 사회적 요인(등록장애인 비율)은 평균 6.38(SD=2.32), 정책확산 요인(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수)은 평균 1.18(SD=1.32)로 나타났다.

<표 4.2>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분석

변 수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경제적 요인	GRDP	6,239,782.23	7,898,623.94	301,845.00	49,352,022.00
	재정자립도	27.52	15.03	6.70	85.70
사회적 요인	등록장애인 비율	6.38	2.32	2.43	11.39
정책확산 요인	인접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 수	1.18	1.32	0.00	8.00

또한, 주요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0.8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장상희, 이상문, 2007). 분석 결과 <표 4.3>와 같으며,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는 r(상관계수)= -.702 ~ .771 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VIF가 10을 넘는지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3> 연구모형의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도시비도시	1							
2. 지자체면적	.768***	1						
3.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수	-.540***	-.357***	1					
4. GRDP	-.303***	-.201**	.669***	1				
5. 재정자립도	-.429***	-.370***	.591***	.771***	1			
6. 등록장애인률	.687***	.566**	-.680***	-.541***	-.702***	1		
7. 인접 기초지방 자치단체 조례 수	-.094	-.106	.221**	.094	.093	-.058	1	
8. 조례여부	-.405***	-.286***	.324***	.214**	.286***	-.397***	.183**	1

제 3 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여부에 따른 주요 변수 차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여부에 따라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가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진행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의 경제적 요인(GRDP, 재정자립도)은 조례 존재 시 GRDP 평균 8,521,078.84(SD=9,785,794.74), 조례가 없을 경우 GRDP 평균 4,989,756.69(SD=6,339,639.14)로 나타났다. 조례 여부에 따라 GRDP가 차이나는지 확인해본 결과 t=2.910(p<.001)으로 나타나 유의하게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정자립도 또한 조례가 존재 시 평균 33.32(SD=18.11), 존재하지 않을 경우 평균 24.34(SD=11.96)를 보여주었고 이들의 t 값은 3.983(p<.001)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요인(등록장애인 비율)은 조례가 있을 경우와 있지 않을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의 값이 다르게 나타났고 이들은 각각 5.13(SD=1.78)와 7.06(SD=2.31)이다. 이들의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진행한 결과 t=-6.984(p<.001)를 보여주었다. 정책확산 요인(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수)은 조례가 있을 경우 평균 1.36(SD=1.43), 조례가 없을 경우 평균 0.85(SD=1.04), t 값은 3.047(p<.001)로 나타나 차이가 유의하였다.

통제변수의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면적은 조례가 있을 경우 평균 286,781,837.60(SD=355,204,588.02), 조례가 없을 경우 평균 514,425,444.18(SD=372,203,464.92), t= -4.468(p<0.01)이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수의 경우 조례가 있을 경우 평균 315,079.84(SD=243,603.05), 조례가 없을 경우 평균 170,355.50(SD=177,047.33), t=4.680(p<0.01)로 나타나 면적과 인구수 다 유의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여부에 따른 차이

구분		조례 O(n=80)		조례 X(n=146)		*t(sig.)*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경제적 요인	GRDP	8,521,078.84	9,785,794.74	4,989,756.69	6,339,639.14	2.910**
	재정자립도	33.32	18.11	24.34	11.96	3.983***
사회적 요인	등록장애인 비율	5.13	1.78	7.06	2.31	-6.984***
정책 확산 요인	인접 기초 지방자치단체 조례 수	1.36	1.43	0.85	1.04	3.047**
통제 변수	기초 지방자치단체 면적	286,781,837.60	355,204,588.02	514,425,444.18	372,203,464.92	-4.468***
	기초 지방자치단체 인구수	315,079.84	243,603.05	170,355.50	177,047.33	4.680***

*p<.05, **p<.01, ***p<.001

제 4 절 회귀분석 결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의 결정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4.5>와 같다. 연구모형의 모형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X^2=70.276, p<.001), 종속변수에 대해 36.7%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Nagelkerke R^2=.367).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에서는 정책확산 요인 중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수(odds ratio=1.543, p<.001)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여부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 수가 많을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있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 3이 채택되었고 더 구체적으로는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수가 1곳 증가할수록 승산이 5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2008년 처음 제정되었는데 그 후, 인접기초지방자치단체인 북구, 남구, 광산구에서 연차적으로 2009년 6월, 2009년 7월, 2009년 10월에 제정되었다. 이는 정책확산 요인의 외부적 요인에 해당되는 지리적 인접성과 관련이 있다. 즉 이는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제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방정부에서 모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의 경우 외부적 요인인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정책확산 요인임을 파악할 수 있고, 중앙정부 측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면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더욱 확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경제적 요인인 GRDP와 재정자립도, 사회적 요인인 등록장애인 비율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GRDP와 재정자립도의 경우 정책확산 요인의 내부적 요인에 해당된다. 재정력이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일수록 정책 혁신 수용이 높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GRDP와 재정자립도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확산 요인 중 내부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등록장애인 비율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요인이지만 이 또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이 의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에서는 도시비도시(odds ratio=.265, $p<.05$)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여부에 유의하게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수(odds ratio=1.813, $p<.05$)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기초지방자치단체 면적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도시지역일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수가 늘어날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있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비도시지역보다 도시지역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있을 승산이 7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수가 1% 증가할수록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있을 승산이 8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의 결정 요인

			B	S.E.	Wald	Exp(B)[17]	p
(상수)			-3.911	5.138	0.579	0.020	0.447
독립변수	경제적 요인	GRDP(ln)[18]	-0.693	0.382	3.282	0.500	0.070
		재정자립도	0.025	0.019	1.784	1.025	0.182
	사회적 요인	등록장애인 비율	-0.111	0.170	0.429	0.895	0.512
	정책 확산 요인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수	0.611***	0.154	15.731	1.543	0.000
통제변수		도시비도시	-1.330*	0.629	4.463	0.265	0.035
		기초지방자치단체 면적(ln)	0.145	0.198	0.533	1.156	0.465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수(ln)	1.034*	0.401	6.642	1.813	0.010
N			226				
예측성공률			78.3%				
Log -2 Likelihood			223.468				
Model X^2(df)			70.276(7)***				
Nagelkerke R^2			.367				

17) exp(B)는 Odds ratio 와 동등개념이다. 이는 독립변수가 1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의 odds가 %증가'로 해석하게 된다. 오즈는 승산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뜻한다.

18) ln은 로그를 취했다는 의미로, GRDP, 기초지방자치단체 면적,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수는 숫자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정규성을 위해 로그로 취하여 활용하였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검증한다. 여기서 독립변수라 함은 경제적 요인(GRDP, 재정자립도), 사회적 요인(등록장애인 비율), 정책확산 요인(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수)등을 의미하고 종속변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로 정하였다. 양자 간의 명확한 검증을 위해 도시비도시, 기초지방자치단체 면적, 기초지방자치단체 인구수를 통제변수로 두었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요인(GRDP, 재정자립도)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고, 둘째 '사회적 요인(등록장애인 비율)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며, 셋째로 '정책확산 요인(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수)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다.

본 연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국가법령 정보센터, 통계청 및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였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은 전국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의 정책확산 요인인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수(odds ratio=1.543, $p<.001$)가 종속변수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경제적 요인인 GRDP와 재정자립도, 사회적 요인인 등록장애인 비율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수가 많을수록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있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인접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수가 1곳 증가할수록 제정가능성이 54.3%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 대한 분석진행 전, 종속변수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채택 여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이유는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GRDP와 재정자립도는 높을수록, 등록된 장애인 수는 많을수록 이에 대한 관련 정책이 제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분석결과, 정책확산 요인만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배경에서도 검토하였듯이, 정책확산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적 요인은 특정정부의 정책이 지리적으로 이웃한 정부의 정책 채택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정책이 확산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적 요인은 지방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특성 등이 정책확산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보면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이 확산되는 경향은 내부적 요인보다 외부적 요인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각 지자체의 GRDP, 등록장애인 비율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자체의 조례 채택 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책확산에는 세 가지 동기가 있다. 이는 사회적 학습, 경제적 경쟁, 정치적 압력(학습, 경쟁, 모방)으로 구분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제정되는 데는 정책확산의 어떤 동기가 적용되었는가.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가지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226개 중 80개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세 가지 확산의 동기 중 사회적 학습현상과 유사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장애인 체육진흥 관련조례 및 정책을 먼저 채택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일종의 정책실험실로 삼아 상대적 이점을 학습하고 정책혁신을 받아들여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8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는 사회적 학습을 통하여 제정·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다 전국적 차원의 확산을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광역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모범적인 장애인 체육진흥 관련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학습을 통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의 전국적인 확산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료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기초지방자치단체별 경제적·사회적·정책확산 요인에 대한 변수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변수를 구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또 다른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2차 데이터를 활용한 양적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심층적인 연구결과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양

적 연구를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관련조례가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정책확산 이론을 적용하여 연구가 수행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에 관한 연구는 본 연구에서 다룬 양적 연구를 바탕으로 질적인 연구가 병행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순은(2015). *지방의회 발전모형*, 서울: 조명문화사.

노화준·남궁근(1993). *공공정책의 결정요인분석,* 서울: 법문사.

장상희·이상문(2007). *사회통계학,* 서울: 교우사.

정하선·김녹현·박선하·이은희·이태희·조현정(2018).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정정길 외(2015).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2. 학위논문

김규동(2008). *와이브로 서비스의 채택 요인에 관한 연구: 확장된 정보기술수용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홍광(2017).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경쟁력에 관한 연구-스마트시티 서비스 정책확산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충환(2012). *출산장려정책 활성화에 따른 효과성 분석-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최선미(2016). *기초자치단체의 노인자살률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 연구논문

강병일·박병도·백승엽·유홍율(2014). 지역사회 장애인체육 현황 및 발전 방안 -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2(2), 1-12.

김경호(2003). 지방분권체제하의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연구,* 9(2), 281-302.

김대진(2015).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학습과 정책의 확산: 도심지역의 버스 환승제 채택과 확산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보,* 19(1), 1-34.

김일수·박재국·김진주(2018). 지체장애인의 운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 탐색.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0(4), 97-117.

김한철·김동원(2016). 생활체육 참여정도가 지체장애인의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5(4), 561-570.

남궁근(1994). 우리나라 지방정부 지출수준의 결정요인분석: 시·군·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8(3), 991-1014.

노형규·황상현(2014). 한국·미국·일본의 장애인체육 관련 법률적 기반에 관한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2(1), 25-38.

문건필(2012).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스포츠와 법,* 15(4), 141-160.

문수진·이종열(2015).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지출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정치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4), 137-159.

박경돈(2018). 복지수준에 대한 지역 간 정책확산의 영향력 연구. *지방정*

부연구, 22(2), 23-49.

변재훈(2006).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현황 및 발전 방안.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4(3), 53-64.

서상범·홍석자(2010).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참여정부」의 분권교부세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2), 151-177.

석호원(2010). 정책혁신으로서 지역축제 확산에 관한 연구: 경기도의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1), 183-206.

손석정(2014).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2(4), 195-209.

손석정(2015).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정비 방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8(3), 33-49.

이기우(2008). 조례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강화.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8), 123-140.

이대웅·권기헌(2014). 정책확산의 영향요인 분석 -사회적기업 조례제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3(2), 93-120.

이상일·박종철(2016).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을 중심으로.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0(3), 129-163.

이승종(2004). 지방차원의 정책혁신 확산과 시간-지방행정정보공개조례의 사례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1), 5-25.

이은국·이은미(2015). 지방정부 정책결정요인의 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25, 1-24.

이은미·임익상·안병윤(2014). 지방정부 정책채택요인의 질적비교분석(QCA): 정책별 채택요인의 결합조건과 시차비교. *한국도*

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3-68.

이정철·허만형(201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 사건사분석 모형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 29-58.

임재란·김현리·최영숙·김영희(2013). 장애인의 운동실태와 영향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4(3), 1335-1341.

정다정·문승민·나태준(2018). 지방정부의 정책 도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자살예방 조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2(2), 281-301.

정진현(2003). 지역복지재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광역자치단체 사회보장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7(4), 137-152.

조창옥·오아라·구교만(2009).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만족도가 참여 후 지속적 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5(1), 679-686.

조창옥·오아라·장지훈(2012). 법에 투영된 장애인체육 현황 및 변천과정-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을 중심으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5(4), 119-139.

지병문·김용철(2003). 지방정부지출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당효과 및 선거경쟁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6, 265-286.

진재문(2006).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연구-1995～2003년 광역시, 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4, 5-30.

최상한(2010). 세계 각국의 복권도입 정책에 미치는 요인: Cox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2), 45-64.

최승권·노형규·임찬규(2005). 장애인체육의 현실적 문제와 행정부서 변경.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3(1), 87-98.

하혜영·이정진(2011). 지방의회 조례안 분석을 통한 자치입법 활동에 대한 연구: 경기도의회 조례안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4), 227-250.

황수경(2004). WHO의 새로운 국제장애분류(ICF)에 대한 이해와 기능적 장애 개념의 필요성. *노동정책연구,* 4(2), 127-148.

Frances S.Berry·김대진(2010). 정책혁신과 확산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정책학회보,* 19(4), 75-114.

4. 해외 단행본 및 연구논문

Allen, M. D., Pettus, C., & Haider-Markel, D. P.(2004). Making the National Local: Specifying the Conditions for National Government Influence on State Policymaking. S*tate Politics and Policy Quarterly,* 4(3), 318-344.

Barrett, D., & Tsui, A. O.(1999). Policy as Symbolic Statement: International Response to National Population Policies. *Social Forces,* 78(1), 213-234.

Berry, F. S., & Berry, W. D.(2007). *Innovation and Diffusion Models in Policy Research,* Colorado: Westview Press. pp. 223 - 260.

Brooks, S. M.(2007). When Dose Diffusion Matter? Explaining the Spread of Structural Pension Reforms Across Na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69(3), 701-715.

Dawson, R. E., & Robinson, J. A.(1963). Inter-Party Competition, Economic Variables, and Welfare Policies in the

American States. *The Journal of Politics,* 25(2), 265-289.

Dobbin, F., Simmons, B., & Garrett, G.(2007). The Global Diffusion of Public Policies: Social Construction, Coercion, Competition or Learn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33, 449-72.

Dye, T. R.(1966). *Politics, economics, and the public: Policy outcomes in the American states.* Chicago: Rand Mcnally.

Gray, V.(1973). Innovation in the States: A Diffusion Stud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7(4), 1174-1185.

Hofferbert, R. I.(1974). *The Study of Public Policy.* New York: Bobbs-Merrill.

Key, V. O.(1963). *American State Politics: An Introduction.* New York: Alfred A. Knopf.

Lockard, D.(1959). *New England State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Rogers, E. M.(2010). *Diffusion of Innovations.* Simon and Schuster.

Shipan, C. R., & Volden, C.(2006). Bottom-Up Federalism: The Diffusion of Antismoking Polices from U.S. Cities to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4), 825-843.

5. 기타자료

문화관광부(2013), 장애인체육 백서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2016),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2017), 장애인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legacy)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8),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사단법인 한국산업정보연구소 보건복지정책연구센터(2018), 장애인 체육활동의 의료비 절감 및 사회·경제적 효과

한국장애인개발원(2017). 2017 장애통계연보

국가법률정보센터

CDC(2011),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WHO(2013), Global strategy on Diet,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부록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시행 2017. 12. 28.]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141호, 2017. 12. 28.,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또는 시·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간 1회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상시 구성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단체 또는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우수선수 또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행사 및 국내·외 교류 지원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체육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및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141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유무

(2018.11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참조)

광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조례유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기초 시(개)	-	-	-	-	-	-	-	-	-	-	-	-	-	-	18	10
기초 군(개)	-	-	0	1	0	1	1	1	-	-	-	-	1	0	0	3
기초 구(개)	17	8	1	14	4	3	6	2	5	0	4	1	1	3	-	-
합(개)	17	8	1	15	4	4	7	3	5	0	4	1	2	3	18	13
	종로구	성동구	동구	중구	서구	중구	중구	남구	동구		동구	유성구	북구	중구	수원시	부천시
	중구	광진구		서구	남구	동구	동구	남동구	서구		중구		울주군	남구	성남시	안산시
	용산구	성북구		영도구	북구	달서구	연수구	옹진군	남구		서구			동구	고양시	안양시
	동대문구	은평구		부산진구	수성구	달성군	부평구		북구		대덕구				용인시	남양주시
	중랑구	강서구		동래구			계양구		광산구						평택시	화성시
	강북구	구로구		남구			서구								의정부시	시흥시
	도봉구	금천구		북구			강화군								파주시	이천시
	노원구	동작구		해운대구											광명시	안성시
	서대문구			사하구											김포시	의왕시
	마포구			금정구											군포시	여주시
	양천구			강서구											광주시	양평군
	영등포구			연제구											양주시	가평군
	관악구			수영구											오산시	연천군
	서초구			사상구											구리시	
	강남구			기장군											포천시	
	송파구														하남시	
	강동구														동두천시	
															과천시	

광역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총합	
조례유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기초 시(개)	0	7	2	1	0	8	4	2	4	1	2	8	2	6	**32**	**43**
기초 군(개)	1	10	2	6	0	7	0	8	4	13	0	13	1	9	**10**	**72**
기초 구(개)	-	-	-	-	-	-	-	-	-	-	-	-	-	-	**38**	**31**
합(개)	1	17	4	7	0	15	4	10	8	14	2	21	3	15	**80**	**146**
	영월군	춘천시	청주시	제천시		천안시	전주시	익산시	목포시	광양시	안동시	포항시	창원시	진주시		
		원주시	충주시	보은군		공주시	군산시	남원시	여수시	곡성군	상주시	경주시	통영시	사천시		
		강릉시	단양군	옥천군		보령시	정읍시	완주군	순천시	구례군		김천시	거창군	김해시		
		동해시	증평군	영동군		아산시	김제시	진안군	나주시	고흥군		구미시		밀양시		
		태백시		진천군		서산시		무주군	담양군	화순군		영주시		거제시		
		속초시		괴산군		논산시		장수군	보성군	장흥군		영천시		양산시		
		삼척시		음성군		계룡시		임실군	해남군	강진군		문경시		의령군		
		홍천군				당진시		순창군	영암군	무안군		경산시		함안군		
		횡성군				금산군		고창군		함평군		군위군		창녕군		
		평창군				부여군		부안군		영광군		의성군		고성군		
		정선군				서천군				장성군		청송군		남해군		
		철원군				청양군				완도군		영양군		하동군		
		화천군				홍성군				진도군		영덕군		산청군		
		양구군				예산군				신안군		청도군		함양군		
		인제군				태안군						고령군		합천군		
		고성군										성주군				
		양양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부록 3]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인접기초지자체의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유무 및 제정연도

(2018.11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참조)

기초지자체	제정연도	인접기초지자체1		인접기초지자체2		인접기초지자체3		인접기초지자체4		인접기초지자체5		인접기초지자체6		인접기초지자체7		인접기초지자체8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9	서울 중구	2010	서울 서대문구	2015	서울 동대문구	2013										
중구	2010	서울 용산구	2013	서울 마포구	2017	서울 서대문구	2015	서울 종로구	2009	서울 동대문구	2013						
용산구	2013	서울 마포구	2017	서울 중구	2010												
성동구		서울 용산구	2013	서울 중구	2010	서울 종로구	2009	서울 동대문구	2013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2013	서울 중랑구	2015	구리시	2017										
동대문구	2013	서울 중구	2010	서울 종로구	2009	서울 중랑구	2015										
중랑구	2015	서울 동대문구	2013	서울 노원구	2011	구리시	2017										
성북구		서울 노원구	2011	서울 강북구	2015	서울 종로구	2009	서울 동대문구	2013	서울 중랑구	2015						
강북구	2015	서울 노원구	2011	서울 도봉구	2009	고양시	2013										
도봉구	2009	서울 노원구	2011	서울 강북구	2015	의정부시	2011	양주시	2010								
노원구	2011	서울 강북구	2015	서울 도봉구	2009	구리시	2017	의정부시	2011	서울 중랑구	2015						
은평구		서울 마포구	2017	서울 서대문구	2015	서울 종로구	2009	고양시	2013								
서대문구	2015	서울 마포구	2017	서울 종로구	2009	서울 중구	2010										
마포구	2017	서울 서대문구	2015	서울 중구	2010	서울 용산구	2013	고양시	2013								
양천구	2014	서울 영등포구	2013														
강서구		서울 양천구	2014	서울 영등포구	2013	인천 계양구	2009	김포시	2008								
구로구		서울 양천구	2014	서울 영등포구	2013	서울 관악구	2015	광명시	2014								
금천구		서울 관악구	2015	광명시	2014												
영등포구	2013	서울 양천구	2014	서울 관악구	2015												
동작구		서울 영등포구	2013	서울 관악구	2015	서울 서초구	2015										
관악구	2015	서울 영등포구	2013	서울 서초구	2015												
서초구	2015	서울 강남구	2013	서울 관악구	2015	과천시	2015										
강남구	2013	서울 서초구	2015	서울 송파구	2013												
송파구	2013	서울 강동구	2012	서울 강남구	2013	성남시	2015	하남시	2009								
강동구	2012	서울 송파구	2013	하남시	2009	성남시	2015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 동구	2012														
서구		부산 동구	2012														
동구	2012																
영도구																	
부산진구		부산 동구	2012														
동래구																	
남구		부산 동구	2012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기초지자체	제정연도	인접기초지자체1		인접기초지자체2		인접기초지자체3		인접기초지자체4		인접기초지자체5		인접기초지자체6		인접기초지자체7		인접기초지자체8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금정구																	
강서구		창원시	2015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 북구	2016	대구 서구	2016	대구 남구	2009	대구 수성구	2009								
동구		대구 북구	2016	대구 수성구	2009												
서구	2016	대구 북구	2016														
남구	2009	대구 서구	2016														
북구	2016	대구 서구	2016														
수성구	2009	대구 남구	2009														
달서구		대구 서구	2016	대구 남구	2009												
달성군		대구 서구	2016														
인천광역시																	
중구	2009	인천 동구	2009	인천 연수구	2009												
동구	2009	인천 서구	2009	인천 연수구	2009												
남구		인천 동구	2009	인천 서구	2009	인천 부평구	2016	인천 연수구	2009								
연수구	2009	인천 동구	2009														
남동구		인천 연수구	2009	인천 부평구	2016												
부평구	2016	인천 서구	2009	인천 계양구	2009												
계양구	2009	인천 서구	2009	김포시	2008	인천 부평구	2016										
서구	2009	김포시	2008	인천 계양구	2009	인천 부평구	2016	인천 동구	2009								
강화군	2009	김포시	2008														
옹진군																	
광주광역시																	
동구	2009	광주 북구	2009	광주 남구	2009												
서구	2008	광주 북구	2009	광주 남구	2009	광주 광산구	2009										
남구	2009	광주 서구	2008	광주 동구	2009	광주 광산구	2009	나주시	2011								
북구	2009	광주 서구	2008	광주 동구	2009	광주 광산구	2009	담양군	2009								
광산구	2009	광주 북구	2009	광주 서구	2008	광주 남구	2009	나주시	2011								
대전광역시																	
동구	2010	대전 중구	2013	대전 대덕구	2005	청주시	2012										
중구	2013	대전 동구	2010	대전 서구	2015	대전 대덕구	2005										
서구	2015	대전 중구	2013	대전 대덕구	2005												
유성구		대전 서구	2015	대전 대덕구	2005	청주시	2012										
대덕구	2005	대전 동구	2010	대전 중구	2013	대전 서구	2015	청주시	2012								
울산광역시																	

기초지자체	제정연도	인접기초지자체1		인접기초지자체2		인접기초지자체3		인접기초지자체4		인접기초지자체5		인접기초지자체6		인접기초지자체7		인접기초지자체8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중구		울산 북구	2014	울산 울주군	2013												
남구		울산 북구	2014	울산 울주군	2013												
동구		울산 북구	2014														
북구	2014	울산 울주군	2013														
울주군	2013	울산 북구	2014														
경기도																	
수원시	2011	용인시	2013														
성남시	2015	서울 송파구	2013	서울 강남구	2013	서울 서초구	2015	과천시	2015	용인시	2013	광주시	2015	하남시	2009		
의정부시	2011	서울 도봉구	2009	서울 노원구	2011	포천시	2014	동두천시	2011	양주시	2010						
안양시		서울 관악구	2015	과천시	2015	광명시	2014	군포시	2008								
부천시		서울 양천구	2014	인천 계양구	2009	인천 부평구	2016	광명시	2014								
광명시	2014																
평택시	2017	오산시	2009	용인시	2013												
동두천시	2011	양주시	2010	포천시	2014												
안산시		군포시	2008	수원시	2011												
고양시	2013	서울 종로구	2009	서울 강북구	2015	서울 마포구	2017	파주시	2010	양주시	2010						
과천시	2015	서울 서초구	2015	서울 관악구	2015	성남시	2015										
구리시	2017	서울 중랑구	2015	서울 노원구	2011												
남양주시		서울 노원구	2011	의정부시	2011	구리시	2017	포천시	2014								
오산시	2009	용인시	2013	평택시	2017												
시흥시		광명시	2014														
군포시	2008																
의왕시		과천시	2015	군포시	2008	성남시	2015	수원시	2011	용인시	2013						
하남시	2009	서울 강동구	2012	서울 송파구	2013	광주시	2015	성남시	2015								
용인시	2013	광주시	2015	성남시	2015	수원시	2011										
파주시	2010	양주시	2010	고양시	2013												
이천시		광주시	2015	용인시	2013												
안성시		용인시	2013	평택시	2017												
김포시	2008	인천 서구	2009	인천 계양구	2009	인천 강화군	2009										
화성시		수원시	2011	용인시	2013	오산시	2009	평택시	2017								
광주시	2015	하남시	2009	성남시	2015	용인시	2013										
양주시	2010	동두천시	2011	포천시	2014	의정부시	2011	파주	2010								
포천시	2014	동두천시	2011	양주시	2010	의정부시	2011										
여주시		광주시	2015	충주시	2015												
연천군		파주시	2010	양주시	2010	동두천시	2011	포천시	2014								
가평군		포천시	2014														
양평군		광주시	2015														
강원도																	
춘천시																	

기초지자체	제정연도	인접기초지자체1		인접기초지자체2		인접기초지자체3		인접기초지자체4		인접기초지자체5		인접기초지자체6		인접기초지자체7		인접기초지자체8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원주시		영월군	2009	충주시	2015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영월군	2009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2009														
영월군	2009	단양군	2015														
평창군		영월군	2009														
정선군		영월군	2009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																	
청주시	2012	대전 동구	2010	대전 대덕구	2005	증평군	2012										
충주시	2015																
제천시		영월군	2009	충주시	2015	단양군	2015										
보은군		대전 동구	2010	청주시	2012	상주시	2015										
옥천군		대전 동구	2010	상주시	2015												
영동군		상주시	2015														
증평군	2012	청주시	2012														
진천군		청주시	2012	증평군	2012												
괴산군		청주시	2012	충주시	2015	증평군	2012	상주시	2015								
음성군		충주시	2015	증평군	2012												
단양군	2015	영월군	2009														
충청남도																	
천안시		청주시	2012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대전 서구	2015														
당진시																	
금산군		대전 중구	2013	대전 서구	2015	대전 동구	2010										

기초지자체	제정연도	인접기초지자체1		인접기초지자체2		인접기초지자체3		인접기초지자체4		인접기초지자체5		인접기초지자체6		인접기초지자체7		인접기초지자체8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부여군																	
서천군		군산시	2015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2009	김제시	2013														
군산시	2015	김제시	2013														
익산시		전주시	2009	군산시	2015	김제시	2013										
정읍시	2011	김제시	2013														
남원시																	
김제시	2013	전주시	2009	군산시	2015	정읍시	2011										
완주군		전주시	2009	김제시	2013	정읍시	2011										
진안군																	
무주군		거창군	2011														
장수군		거창군	2011														
임실군		정읍시	2011														
순창군		정읍시	2011	담양군	2009												
고창군		정읍시	2011														
부안군		김제시	2013	정읍시	2011												
전라남도																	
목포시	2009	영암군	2015	해남군	2015												
여수시	2009	순천시	2009														
순천시	2009	여수시	2009	보성군	2011												
나주시	2011	광주 남구	2009	광주 광산구	2009	영암군	2015										
광양시		순천시	2009														
담양군	2009	광주 북구	2009														
곡성군		순천시	2009	담양군	2009												
구례군		순천시	2009														
고흥군		보성군	2011														
보성군	2011	순천시	2009														
화순군		광주 동구	2009	광주 남구	2009	광주 북구	2009	나주시	2011	순천시	2009	담양군	2009	보성군	2011	영암군	2015
장흥군		보성군	2011	영암군	2015												
강진군		영암군	2015	해남군	2015												
해남군	2015	영암군	2015														
영암군	2015	목포시	2009	나주시	2011	해남군	2015										
무안군		목포시	2009	나주시	2011	영암군	2015										
함평군		광주 광산구	2009	나주시	2011												

기초지자체	제정연도	인접기초지자체1		인접기초지자체2		인접기초지자체3		인접기초지자체4		인접기초지자체5		인접기초지자체6		인접기초지자체7		인접기초지자체8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영광군																	
장성군		광주 북구	2009	광주 광산구	2009	정읍시	2011	담양군	2009								
완도군		해남군	2015														
진도군		해남군	2015														
신안군		목포시	2009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상주시	2015														
안동시	2008																
구미시		상주시	2015														
영주시		영월군	2009	단양군	2015	안동시	2008										
영천시																	
상주시	2015																
문경시		충주시	2015	단양군	2015	상주시	2015										
경산시		대구 수성구	2009														
군위군																	
의성군		상주시	2015	안동시	2008												
청송군		안동시	2008														
영양군		안동시	2008														
영덕군																	
청도군		울산 울주군	2013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대구 북구	2016														
예천군		단양군	2015	상주시	2015	안동시	2008										
봉화군		영월군	2009	안동시	2008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																	
창원시	2015																
진주시		창원시	2015														
통영시	2011																
사천시																	
김해시		창원시	2015														
밀양시		울산 울주군	2013	창원시	2015												
거제시		통영시	2011														
양산시		울산 울주군	2013														
의령군																	

기초지자체	제정연도	인접기초지자체1		인접기초지자체2		인접기초지자체3		인접기초지자체4		인접기초지자체5		인접기초지자체6		인접기초지자체7		인접기초지자체8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지자체	제정연도
함안군		창원시	2015														
창녕군		창원시	2015														
고성군		창원시	2015	통영시	2011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2011														
함양군		거창군	2011														
거창군	2011																
합천군		거창군	2011														

[부록 4] 기초지방자치단체별 활용 데이터

(통계청,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참조)

* 조례가 제정된 기초지자체의 경우, 제정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작성함.

**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기초지자체의 경우, 2017년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작성함.

기초지자체	도시비도시 여부	면적(㎡)	인구수(명)	GRDP(백만원)	재정자립도(%)	인구대비 장애인율(%)	조례제정 인접지자체수	조례유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	23,912,788	170,705	23,758,373	72.2	3.72	0	있음
중구	도시	9,959,791	129,465	44,161,229	85.7	4.8	1	있음
용산구	도시	21,866,466	243,232	8,905,758	61.6	3.79	1	있음
성동구	도시	16,856,985	304,808	9,673,958	39.6	3.86	4	없음
광진구	도시	17,063,241	357,703	5,592,832	33.5	3.5	3	없음
동대문구	도시	14,215,008	363,258	6,301,762	41.6	4.57	2	있음
중랑구	도시	18,495,350	418,836	3,794,177	23	4.84	2	있음
성북구	도시	24,573,191	444,055	4,938,574	26.6	3.95	5	없음
강북구	도시	23,600,563	335,025	2,635,236	18.2	5.18	3	있음
도봉구	도시	20,668,257	373,936	2,274,719	35.3	3.46	0	있음
노원구	도시	35,437,909	611,230	4,131,202	27.4	4.71	1	있음
은평구	도시	29,709,359	486,794	3,491,843	24	4.38	4	없음
서대문구	도시	17,626,255	310,376	6,860,590	25.2	4.07	2	있음
마포구	도시	23,852,112	379,892	15,763,646	39.8	3.53	4	있음
양천구	도시	17,406,811	492,528	5,470,079	35.8	3.64	1	있음
강서구	도시	41,436,825	601,691	9,627,187	26.9	4.77	4	없음
구로구	도시	20,119,954	410,742	11,163,275	26.7	4.21	4	없음
금천구	도시	13,020,164	235,154	13,735,602	30.2	4.7	2	없음
영등포구	도시	24,548,177	391,408	25,011,534	56.2	4.1	0	있음
동작구	도시	16,354,213	396,217	4,892,610	34.2	3.68	3	없음
관악구	도시	29,568,848	513,186	5,156,563	21.5	3.99	1	있음
서초구	도시	46,985,554	449,678	27,286,099	62.5	2.43	1	있음
강남구	도시	39,501,152	564,197	49,352,022	80.5	2.77	0	있음
송파구	도시	33,874,855	673,115	18,617,139	63.3	3.06	2	있음
강동구	도시	24,588,972	495,138	6,157,760	44.2	3.83	1	있음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	2,825,996	44,218	2,771,757	30.4	5.71	1	없음
서구	도시	13,978,324	110,039	2,292,828	16.7	5.9	1	없음
동구	도시	9,736,399	100,420	3,921,297	18	6.43	0	있음
영도구	도시	14,195,627	123,521	1,651,783	13.5	7.42	0	없음
부산진구	도시	29,665,979	371,703	7,573,948	27.2	4.93	1	없음
동래구	도시	16,632,894	270,727	3,178,984	23.4	4.19	0	없음
남구	도시	26,812,384	273,854	5,120,314	31.4	4.77	1	없음
북구	도시	39,365,981	302,924	2,505,521	17	5.21	0	없음
해운대구	도시	51,473,049	412,039	6,271,634	32	4.22	0	없음
사하구	도시	41,886,457	333,301	6,001,931	21.7	5.18	0	없음
금정구	도시	65,274,389	244,469	4,448,990	24.1	4.58	0	없음
강서구	도시	181,491,529	117,382	12,983,700	53.9	3.83	1	없음
연제구	도시	12,098,570	206,742	5,655,276	24.7	4.47	0	없음
수영구	도시	10,206,904	179,996	2,278,304	25.5	4.52	0	없음
사상구	도시	36,093,166	229,219	6,328,376	24.6	5.83	0	없음
기장군	비도시	218,298,021	161,651	4,466,556	37.7	4.75	1	없음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	7,056,370	78,986	4,248,047	32	5.34	4	없음
동구	도시	182,161,631	349,379	5,370,066	21	5.48	2	없음
서구	도시	17,328,302	206,028	3,586,795	19.3	5.48	0	있음

기초지자체	도시비도시 여부	면적(㎡)	인구수(명)	GRDP(백만원)	재정자립도(%)	인구대비 장애인율(%)	조례제정 인접지자체수	조례유무
남구	도시	17,428,915	175,317	3,246,697	17.6	4.57	0	있음
북구	도시	94,071,813	443,119	9,283,081	24.7	4.46	0	있음
수성구	도시	76,536,623	451,732	4,858,479	35.1	3.63	0	있음
달서구	도시	62,343,286	578,068	10,522,571	26.5	4.61	2	없음
달성군	비도시	426,676,168	243,375	6,708,497	40.6	4.64	1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	140,274,744	88,713	7,809,991	50	4.98	0	있음
동구	도시	7,193,925	74,866	2,221,876	29.2	5.74	0	있음
남구	도시	24,834,652	419,267	5,098,091	21.5	5.19	4	없음
연수구	도시	54,946,952	268,668	2,470,576	29.2	3.81	0	있음
남동구	도시	57,055,358	536,578	15,094,588	33.7	4.6	2	없음
부평구	도시	32,007,510	555,844	9,321,503	22.5	4.84	2	있음
계양구	도시	45,569,771	342,299	2,776,653	23.5	3.75	1	있음
서구	도시	116,902,904	393,346	8,227,509	33.4	4.21	1	있음
강화군	비도시	411,446,461	67,387	1,443,322	16.4	6.42	1	있음
옹진군	비도시	172,883,054	21,573	391,344	12.9	6.83	0	없음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	49,317,392	109,963	2,152,511	14.9	5.04	0	있음
서구	도시	47,775,736	307,072	5,267,680	22.7	3.78	0	있음
남구	도시	60,984,158	213,073	1,761,758	15.7	4.77	1	있음
북구	도시	120,305,295	474,121	5,679,448	16.2	4.23	1	있음
광산구	도시	222,798,607	320,660	6,669,315	19.2	4.21	1	있음
대전광역시								
동구	도시	136,670,953	246,116	2,561,525	16.4	5.91	1	있음
중구	도시	62,141,749	264,125	4,511,004	20.3	5.33	2	있음
서구	도시	95,505,943	496,132	8,956,052	19.5	4.17	2	있음
유성구	도시	176,455,997	348,428	10,868,717	38.5	3.4	3	없음
대덕구	도시	68,689,538	226,947	4,462,845	29.4	4.29	0	있음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	37,009,056	238,652	3,773,006	21.4	4.58	2	없음
남구	도시	73,460,663	335,439	23,741,231	39.4	3.84	2	없음
동구	도시	36,036,515	169,605	10,657,540	27.9	4.21	1	없음
북구	도시	157,335,925	185,695	13,985,332	37.8	4	1	있음
울주군	비도시	757,334,888	207,840	16,829,291	46.3	5.19	0	있음
경기도								
수원시	도시	121,054,375	1,077,535	23,731,639	64	3.61	0	있음
성남시	도시	141,659,163	974,608	24,923,284	54.2	3.64	4	있음
의정부시	도시	81,539,418	431,801	5,634,175	41.9	4.43	2	있음
안양시	도시	58,497,532	587,764	16,007,658	52.6	3.62	3	없음
부천시	도시	53,442,446	850,329	16,358,635	42.4	4.28	4	없음
광명시	도시	38,520,232	353,100	5,832,098	49.5	4.03	0	있음
평택시	도시	458,076,120	470,832	23,102,366	46.5	4.76	2	있음
동두천시	도시	95,658,808	95,653	1,251,399	24.2	5.78	1	있음
안산시	도시	155,198,095	677,710	24,002,303	72.2	4.72	2	없음
고양시	도시	268,059,218	969,916	14,604,936	54.6	3.68	3	있음
과천시	도시	35,868,073	70,156	2,762,181	44.5	3.09	0	있음
구리시	도시	33,311,789	193,763	3,752,306	45	4.29	2	있음
남양주시	도시	458,070,891	665,321	8,185,791	39.8	4.45	4	없음
오산시	도시	42,726,512	150,237	1,839,349	54.5	3.57	0	있음
시흥시	도시	137,607,939	419,664	11,050,509	55.2	4.2	1	없음
군포시	도시	36,415,885	275,351	4,025,224	51.8	3.39	0	있음

기초지자체	도시비도시 여부	면적(㎡)	인구수(명)	GRDP(백만원)	재정자립도(%)	인구대비 장애인율(%)	조례제정 인접지자체수	조례유무
의왕시	도시	53,986,775	155,767	2,972,457	51.2	3.9	5	없음
하남시	도시	93,006,863	143,638	2,070,085	48.7	4.34	0	있음
용인시	도시	591,350,941	915,959	28,584,499	60.8	3.34	1	있음
파주시	비도시	673,115,033	323,011	10,015,411	53.6	4.8	0	있음
이천시	비도시	461,426,221	213,142	10,771,164	51	4.79	2	없음
안성시	비도시	553,397,808	182,786	6,936,351	36.8	5.76	2	없음
김포시	비도시	276,600,491	205,997	4,991,460	44.5	4.07	0	있음
화성시	비도시	693,952,248	691,086	45,454,566	67.3	3.5	4	없음
광주시	도시	431,016,915	298,858	6,227,663	46.8	4.41	2	있음
양주시	비도시	310,315,259	182,106	4,908,138	55.2	5	0	있음
포천시	비도시	826,648,999	156,603	4,221,208	29.5	6.19	3	있음
여주시	비도시	608,336,502	111,984	2,872,167	36.7	6.37	2	없음
연천군	비도시	676,312,014	45,431	1,043,297	23.5	7.34	4	없음
가평군	비도시	843,724,879	62,973	1,505,748	25.3	8.34	1	없음
양평군	비도시	877,693,097	115,105	1,823,492	25	6.48	1	없음
강원도								
춘천시	비도시	1,116,403,402	280,514	5,994,978	28.7	5.52	0	없음
원주시	비도시	868,269,598	341,337	7,528,230	27.7	5.25	2	없음
강릉시	비도시	1,040,709,436	213,952	4,486,231	23.7	6.21	0	없음
동해시	도시	180,206,138	92,851	2,685,220	20.9	7.28	0	없음
태백시	도시	303,495,317	45,888	899,095	29.9	9.33	1	없음
속초시	도시	105,735,518	82,273	1,422,034	23.7	6.03	0	없음
삼척시	비도시	1,186,955,786	68,514	2,546,260	17.7	8.04	0	없음
홍천군	비도시	1,820,278,031	70,340	2,114,122	18.8	7.22	0	없음
횡성군	비도시	998,098,360	46,281	1,508,925	16.2	7.7	1	없음
영월군	비도시	1,127,635,482	40,201	933,790	13.1	8.26	0	있음
평창군	비도시	1,463,894,643	43,092	1,400,819	14	7.26	1	없음
정선군	비도시	1,219,774,519	38,173	1,215,836	31.7	8.86	1	없음
철원군	도시	889,473,417	47,185	1,537,783	12.8	6.67	0	없음
화천군	비도시	908,922,134	26,022	1,173,077	13.7	6.86	0	없음
양구군	비도시	661,814,926	23,835	822,515	17.5	6.5	0	없음
인제군	비도시	1,645,179,452	32,582	1,287,796	12	6.05	0	없음
고성군	비도시	660,858,939	30,029	892,666	14.9	7.79	0	없음
양양군	비도시	630,095,218	27,207	846,718	14.9	8.47	0	없음
충청북도								
청주시	비도시	940,801,577	661,946	13,168,254	37.8	4.3	3	있음
충주시	비도시	983,525,195	208,527	5,693,269	18.9	6.09	0	있음
제천시	비도시	883,397,741	136,432	2,968,167	22.5	7.71	3	없음
보은군	비도시	584,221,931	34,053	1,063,103	10	9.49	3	없음
옥천군	비도시	537,170,225	51,766	1,308,217	18.6	9.8	2	없음
영동군	비도시	845,960,442	50,240	1,019,562	15.9	9.11	1	없음
증평군	도시	81,802,190	34,009	935,066	26	5.98	0	있음
진천군	비도시	407,251,212	73,677	4,763,291	30.4	5.76	2	없음
괴산군	비도시	842,157,982	39,054	1,138,049	14.1	9.6	4	없음
음성군	비도시	520,233,402	97,306	5,949,401	32.9	7.66	2	없음
단양군	비도시	781,147,472	30,948	1,189,728	10.3	9.28	1	있음
충청남도								
천안시	비도시	636,078,527	631,531	22,845,337	46.1	4.02	1	없음
공주시	비도시	864,209,646	108,432	3,123,719	18.4	8.03	0	없음
보령시	비도시	573,896,410	103,198	3,884,294	21.3	8.22	0	없음
아산시	비도시	542,623,901	311,453	23,724,774	47.1	4.77	0	없음

기초지자체	도시비도시 여부	면적(㎡)	인구수(명)	GRDP(백만원)	재정자립도(%)	인구대비 장애인율(%)	조례제정 인접지자체수	조례유무
서산시	비도시	741,304,975	171,678	9,677,632	35.4	5.49	0	없음
논산시	비도시	555,178,610	122,240	3,122,446	16.9	8.76	0	없음
계룡시	비도시	60,721,047	43,967	752,872	21.9	3.57	1	없음
당진시	비도시	704,435,299	167,439	11,379,945	37.6	5.86	0	없음
금산군	비도시	577,206,740	53,894	1,867,348	19.8	8.71	3	없음
부여군	비도시	624,534,704	69,086	1,796,139	12.7	10.22	0	없음
서천군	비도시	365,705,778	55,175	1,766,182	12.6	10.48	1	없음
청양군	비도시	479,114,992	32,837	889,817	16.7	9.48	0	없음
홍성군	비도시	442,873,860	101,570	2,676,633	20.9	6.95	0	없음
예산군	비도시	542,664,454	80,338	2,496,357	19.5	8.65	0	없음
태안군	비도시	515,825,061	63,932	2,541,846	19.6	7.72	0	없음
전라북도								
전주시	도시	205,484,489	631,532	8,193,045	34.6	4.65	0	있음
군산시	비도시	396,408,257	278,098	9,376,391	22.9	6.24	1	있음
익산시	비도시	506,542,147	300,187	6,800,261	20.9	6.75	3	없음
정읍시	비도시	692,913,391	122,000	2,240,638	12.5	8.68	0	있음
남원시	비도시	752,231,829	83,281	1,664,238	11.3	9.43	0	없음
김제시	비도시	545,851,800	92,317	2,606,688	11	10.79	2	있음
완주군	비도시	821,081,051	95,975	4,551,069	28	8.24	3	없음
진안군	비도시	789,096,018	26,271	594,833	13.3	10.66	0	없음
무주군	비도시	631,838,289	24,809	638,240	18.1	10.11	1	없음
장수군	비도시	533,273,137	23,003	583,805	15.7	10.4	1	없음
임실군	비도시	597,367,624	30,162	748,826	15.8	10.7	1	없음
순창군	비도시	495,936,567	29,698	748,091	16.3	10.18	2	없음
고창군	비도시	607,738,005	60,472	1,340,311	14.9	9.52	1	없음
부안군	비도시	493,210,923	56,086	1,319,222	15.1	9.4	2	없음
전라남도								
목포시	도시	51,635,536	245,651	3,286,943	23.4	5.25	0	있음
여수시	비도시	510,544,178	295,133	16,232,845	30.6	5.94	0	있음
순천시	비도시	910,978,216	269,429	3,869,059	21.9	5.36	0	있음
나주시	비도시	608,400,380	90,118	2,280,841	15.4	9.91	2	있음
광양시	비도시	463,116,197	155,857	9,946,133	35.5	4.86	1	없음
담양군	비도시	455,096,496	48,347	878,029	14.7	7.85	0	있음
곡성군	비도시	547,478,384	30,131	974,334	14	11.01	2	없음
구례군	비도시	443,260,500	27,525	536,010	9.9	10.38	1	없음
고흥군	비도시	807,348,327	66,736	1,218,577	12.8	11.39	1	없음
보성군	비도시	663,903,340	48,792	756,964	8.9	9.75	1	있음
화순군	비도시	786,909,881	64,680	1,497,002	21.7	7.77	8	없음
장흥군	비도시	622,322,408	40,136	802,329	13.1	10.1	2	없음
강진군	비도시	500,917,924	36,868	724,300	9.3	9.41	2	없음
해남군	비도시	1,031,368,962	76,981	1,576,242	6.7	8.69	0	있음
영암군	비도시	604,171,129	58,852	3,841,865	16.4	8.22	2	있음
무안군	비도시	449,730,899	82,872	3,088,261	16.4	7.7	3	없음
함평군	비도시	392,105,946	34,328	782,950	10.3	11.22	2	없음
영광군	비도시	474,960,398	54,774	2,839,433	17.4	9.6	0	없음
장성군	비도시	518,398,910	46,111	1,518,447	19.2	9.18	4	없음
완도군	비도시	396,444,766	52,109	927,230	13.5	8.92	1	없음
진도군	비도시	440,115,630	31,765	677,190	12.4	10.19	1	없음
신안군	비도시	655,916,742	42,070	921,681	8.6	10.57	1	없음
경상북도								
포항시	비도시	1,130,011,122	513,832	16,962,287	37.1	5.07	0	없음

기초지자체	도시비도시 여부	면적(㎡)	인구수(명)	GRDP(백만원)	재정자립도(%)	인구대비 장애인율(%)	조례제정 인접지자체수	조례유무
경주시	비도시	1,324,938,359	257,903	9,630,331	27.9	6.18	0	없음
김천시	비도시	1,009,827,381	142,908	4,254,457	29.5	7.5	1	없음
안동시	비도시	1,521,984,291	167,916	2,146,694	14.5	7.08	0	있음
구미시	비도시	615,293,655	421,799	27,931,945	47.6	3.69	1	없음
영주시	비도시	669,902,030	108,371	2,882,221	17.6	7.58	3	없음
영천시	비도시	919,217,115	100,615	3,329,256	17.4	7.58	0	없음
상주시	비도시	1,254,658,272	102,892	1,972,533	9.5	8.3	0	있음
문경시	비도시	911,833,371	73,294	1,561,201	18.3	8.7	3	없음
경산시	비도시	411,770,700	259,485	7,135,771	30.8	5.26	1	없음
군위군	비도시	614,281,574	24,215	666,335	10.6	9.37	0	없음
의성군	비도시	1,175,117,290	53,474	1,170,216	14.8	10.82	2	없음
청송군	비도시	846,059,316	26,006	608,812	10.7	10.08	1	없음
영양군	비도시	815,643,402	17,479	357,845	13.6	10.61	1	없음
영덕군	비도시	741,228,687	38,529	753,770	13.1	9.67	0	없음
청도군	비도시	693,721,355	43,346	940,523	16.1	9.29	1	없음
고령군	비도시	384,057,327	33,768	1,359,659	21	8.91	0	없음
성주군	비도시	616,081,537	45,138	1,646,509	15.3	8.29	0	없음
칠곡군	비도시	450,929,619	120,864	3,750,169	28.9	4.99	1	없음
예천군	비도시	661,417,314	49,253	953,299	11.5	9.91	3	없음
봉화군	비도시	1,201,790,539	33,259	980,282	11.2	9.38	2	없음
울진군	비도시	989,897,713	50,974	2,307,204	17.4	8.01	0	없음
울릉군	비도시	72,877,837	9,975	301,845	17.1	5.65	0	없음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	747,818,731	1,075,168	35,678,629	38	4.53	0	있음
진주시	비도시	712,944,069	346,681	6,636,918	34.1	5.09	1	없음
통영시	비도시	239,859,565	140,297	3,473,004	24.4	5.47	0	있음
사천시	비도시	398,649,589	114,252	3,844,390	22.6	6.39	0	없음
김해시	비도시	463,364,980	532,132	14,159,026	41.6	4.42	1	없음
밀양시	비도시	798,636,034	107,898	2,521,271	19.5	8.05	2	없음
거제시	비도시	402,745,412	254,073	10,376,055	37.9	4.22	1	없음
양산시	비도시	485,411,853	338,535	10,155,155	42.2	4.44	1	없음
의령군	비도시	482,860,619	27,849	762,483	17.2	10.56	0	없음
함안군	비도시	416,597,155	68,207	3,557,833	27.3	7.47	1	없음
창녕군	비도시	532,860,749	64,101	2,132,994	19.4	8.19	1	없음
고성군	비도시	517,929,662	54,060	2,485,722	16	8.53	2	없음
남해군	비도시	357,554,592	44,642	837,734	15	10.06	0	없음
하동군	비도시	675,622,348	48,831	2,242,566	15	9.47	0	없음
산청군	비도시	794,811,904	36,340	881,360	13.2	9.7	1	없음
함양군	비도시	725,434,401	40,175	827,408	17	9.36	1	없음
거창군	비도시	803,200,594	63,421	1,235,941	12.8	7.76	0	있음
합천군	비도시	983,467,567	47,000	935,797	14.9	10.16	1	없음

Abstract

Why do Local Governments promote Physical Exercise of Disabled People through their Ordinances?

-The Cases of South Korea's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Kim, Kyung-Hwa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Policy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analyze what are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decisions of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in Korea about whether to enact an ordinance on the promotion of physical exercise of disabled people.

This research adopted three independent variables - economic, social and policy diffusion factors - each of which was operationalized into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GRDP) of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government, its financial independence

rates, registration rat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number of relative ordinances in neighboring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As a dependent variable, it was considered whether an ordinance on the promotion of physical exercise of disable people existed in the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This thesis used publication and statistics from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website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Also, binary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the existence of a relative ordinance in the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A total of 226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nationwide were survey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ly, the economic factors - the GRDP and the financial independence rate -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Originally, the research had an hypothesis that suggested the higher the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GRDP and financial independence rates, the more likely it would have established an ordinance on physical exercise promotion for the disabled. Such economic factors, however,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Secondly, the social factor - the ratio of the registered disabled -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either. Originally, it was predicted that the higher the percentage of the registered to the total disabled population, the more

likely the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would have enacted an ordinance on the promotion of physical exercise for the disabled. Such social factors, however,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Lastly, the policy diffusion factor – the number of relative ordinances in neighboring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dependent variable. This result corresponded to the research hypothesis that had suggested the more the number of relative ordinances in neighboring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the more likely the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would have enacted their own ordinances. This suggests that the possibility of policy selection due to external factors are highly based on policy diffusion theory.

These research would have implications for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not yet equipped with a relative ordinance as its findings provide a direction for the enactment of such an ordinance.

Moreover,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sought to use a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in relation to the issue of ordinance enactment to promote physical exercise of disabled people for the first time. However, there should be more balanced research,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 order to raise the awareness among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on the necessity of the enactment of a physical exercise ordinance for the disabled and ultimately, raise the quality of lif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fields of physical activity and sports.

Keywords: Financial independence rat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Ordinance, Physical exercise of disabled people, The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The number of relative ordinances in neighboring basic level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The promotion of physical exercise, The registration rat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tudent number: 2014-23697